

6) 조명설비

- ① 공용계단의 조명은 복수 설치 등에 의해 바닥 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② 공용계단에 안전등을 설치

V. 고령자 주택의 유형론

'고령자 주택(Housing for the Elderly)'이라는 용어는 고령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자에게 다양한 방면에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수준·사생활 보장을 지향하고, 다양한 건물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영국의 고령자 주택 형태

1) 카테고리 1주택(Category 1)

건강한 고령자가 대상이고 전용설비가 갖추어진 주택형으로 거주자는 자신의 가사는 물론 정원 손질 등 고도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2) 카테고리 2주택(Category 2)

복수 주택으로 구성되어 공동실과 공동세탁실과 같이 광범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생활하는 일이 많고 기계화나 공동처리 따위로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 시설을 필요로 하며 건강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Residential Care Home

1인용 거주자실, 공동식당, 화장실, 목욕탕 등의 공동시설을 가지는 거주시설이다. 거주자는 화장실, 세면, 착의, 가사에 대한 수발 형태로 개인적인 도움(personal care)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고 반드시 의료적 간호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점점 더 신체장애의 정도가 심해져 자립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4) Nursing Homes

질환이나 상해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나 허약한 고령자를 단기 혹은 장기간에 걸쳐 거주시키는 시설이다. 이것은 유자격의 간호사에 의해, 의료적인 도움(Nursing Care)을 제공한다. 이 시설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고 Residential Care Home과 유사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Residential Care Home은 개인적인 도움(personal care)을 제공하는데 비해 이 시설은 의료적인 도움(nursing care)을 준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5) Sheltered Housing

고령자 주택을 정의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음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 상주하는 관리인(warden)
- 각 거주자실마다 장착된 경보시스템
- 전용설비가 완비된 주택에 살 수 있는 것은 고령자에 한정되어 있을 것

6) Very Sheltered Housing

본질적으로 종래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Sheltered Housing을 발전시킨 형태이다. 복지자금과 개인적인 도움(personal care) 제공, 조직과 투입이 고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허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 형태는 카테고리2의 절반 정도라 할 수 있다.

7) 퇴직자 주택

고령자 대상의 민간분양 시설에 사용되는 용어로 전형적으로 전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8) 특별 케어 주택(Special Care Housing)

너무 허약하여 착의 및 침대에서 나오는 등의 기본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하고 건강상·정신상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과 케어환경을 가지고 있다.

<표 2> 영국·미국의 시설과 주택형태의 정의

| 시설과 주택형태에 의한 건물유형 정의 | 영국 | | | | | | 미국 | | | | | |
|---------------------------|-----------------------|-----------------------|-------------------|------------------------|-------|--------|--------------------------|---------------|----------|--------------------|---------------|--------------------|
| | 카 태 고 리 1 | 카 태 고 리 2 | Sheltered housing | very sheltered housing | 퇴직자주택 | 특별케어주택 | residential care housing | nursing homes | 독립거주unit | congregate housing | personal care | 건/노nursing housing |
| 전용설비 완비 소주택이나 빌라 | ● | | ● | | ● | | | ● | | | | ● |
| 전용설비 완비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1인용 거주자실 | | | | | | ● | ● | ● | | | ● | ● |
| 기본적인 공동시설(세탁실 등) | ○ | ● | ● | ● | ● | | | ● | | | | |
| 전면적인 공동시설(식사시설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인이 조정(control) 하는 경보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지내 퍼스널 케어시설 | | | | ● | ● | ● | ● | | ○ | ● | ● | ● |
| 부지내 너싱 케어시설 | | | | | | ○ | | ● | | | ● | ● |

2. 미국의 고령자 주택 형태

1) 독립 거주 (자립 퇴직자 거주) 유닛

건강한 고령자 혹은 전기(前期)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전용설비가 완비된 시설이다. 세탁실 외 어떤 형태로든 공동 서비스를 갖춘 것이다. 이것은 항상 도시권에서 8층 건물 전후의 중고층 형식으로 건설된다.

2) Congregate Housing

주환경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개념이나 몇 가지의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용 공간, 세탁, 청소, 쇼핑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공동식사시설을 가지고 있다. 고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직원을 필요로 하고 교회나 자선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3) Personal Care Housing

허약한 고령자의 착의, 목욕, 세면 등과 같은 개인적인 도움(personal care)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시기에는 이와 같은 시설에서 거주자는 침실 혹은 목욕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용목욕탕이 딸린 1인용 침실을 설치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4) 고도 Nursing Housing

개인적인 도움(personal care)과 의료 케어, 두가지 모두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건물 형태이다. 미국은 법에 의해 '고도 너싱케어시설'과 '중도 너싱케어시설'이 있다. 이 정의는 의료적 간호 정도에 따른 것이고 시설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 고도 너싱케어시설에서는 의사에 의해 간호가 이루어지고 중도 너싱케어시설에서는 유자격의 간호사에 의해 간호된다. 고도 너싱케어시설은 현재 대단위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3> 일본의 시설과 주택형태의 정의

| 시설과 주택 형태에 따른 건물유형의 정의 | 일본 | | | | | | |
|---------------------------|------------------|-----------------------|------------------------------|---------------------------------|---------------------------------|-----------------------|---------------------------------|
| | 노 인 맨 손 | 유 료 노 인 홈 | 공 적 케어 노 인 주택 | 경 비 노 인 홈 B 형 | 경 비 노 인 홈 A 형 | 양 호 노 인 홈 | 특 별 양 호 노 인 홈 |
| 전용시설 완비의 소주택이나 빌라 | | | | | | | |
| 전용시설이 있는 형태 | ● | ● | ● | ● | | | |
| 1인용 거주자실 | | | | | ● | | |
| 4인용 거주자실 | | | | | | ● | ● |
| 기본적인 공동시설(라운지, 세탁실 등) | ● | ● | ● | ● | ● | ● | ● |
| 전면적인 공동시설(중양식사시설 포함) | ● | ● | ○ | ● | ● | ● | ● |
| 관리인이 조정하는 경보시스템 | | ● | ● | ● | ● | ● | ● |
| 부지내 퍼스널케어시설 | | ● | ● | | ● | ● | ● |
| 부지내 너싱케어시설 | | ○ | | | | ● | ● |

*특별양호노인홈이란 Residential care, Personal care, Nursing care를 제공하고 고령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여하와 상관 없이 입소할 수 있는 고령자 시설이지만, 동경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을 하여도 1년 이상은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는 형편이다.

5) Life Care Community

이 시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것이고 가장 세련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1960대 초부터 경영이 개시되었고 특징으로는 거주자의 여생을 책임지는 종신케어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라이프 케어는 하나의 정해진 건물형태라기보다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개념이란 하나의 주택 형태에 건강한 퇴직자를 거주시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고(이 경우 지원 서비스는 주로 교제상에 관한 것, 가사에 관한 것이 된다)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허약한 고령자를 살게 하여 변화하는 욕구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다.

거주환경은 의료케어와 퍼스널케어 쌍방을 포함하고 부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으로 다른 케어에 비해 개인이 여생을 마칠 때까지 동일한 부지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령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융통성이 있는 건물형태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정의 내용은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VI. 고령자 ·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실천방법론

뇌졸중으로 쓰러져 3년간이나 와상상태였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파킨슨병이었는데 화장실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입구 문틀을 붙들고 출입하여 왼쪽 어깨와 오른팔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짓말같이 고통이 사라졌다. 이런 사실을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사실을 일본에서 참가한 주택개조지원 네트워크(복지 · 의료 · 보건 · 건축 및 행정방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주택개조지원팀)에서 몇 번이고 경험하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물론 초능력자의 도움이 아니고 Unit Bath(욕실 + 화장실)에 손잡이(Handrail)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신체가 부자유스러워도 혼자서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하고 외출도 할 수 있는 주택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지만 와상노인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왜 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도 와상의 원인이 된다

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와상은 복지와 의료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왔다.

1. 계속되는 계란과 닭의 논리(비용이 아니라 질)

주택개조에는 많은 돈이 들고, 노인은 앞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는지 모른다. 돈을 들이면 아깝고 헛되이 쓰는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대보수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돈을 많이 들였다고 반드시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몇만원하는 손잡이로도 자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개조에는 많은 돈이 든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주택개조로 소중한 것은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는가이다.

결국 늙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방문을 해서 어떤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서로 말하여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뒤에 복지 · 의료 · 보건 · 건축분야에서 본 감상을 서로 내 바 당사자와 지원팀이 마음을 서로 일치시킨다.

2. 사회적 · 경제적 효과

1) 홈헬퍼 서비스(Home Helper Service)

홈헬퍼를 주 6회 이용하던 것이 주택개조 후에 주 3회로 줄어든 예가 있다. 이같이 주택개조를 하면 시 · 군 · 구청에서 홈헬퍼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고 홈헬퍼 서비스 사업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주택개조를 하지 않으면 홈헬퍼가 노인을 부축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허리를 다치는 일도 자주 있다. 주택개조를 하면 간호가 편해지고 노동조건이 개선된다. 그리고 보다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홈헬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홈헬퍼가 되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병원의 재활치료를 받아 걷게 되어 화장실과 목욕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 퇴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택개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재발하여 병원에 다시 들어오게 되거나 와상상태가 된 노인도 있다. 이것만으로는 재활치료에 소요된 비용이 헛되다고 느낄 수 있다.

2) 의료비 절약

어떤 재활치료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와 같은 예가 많았지만 퇴원 환자의 주택개

조를 시작하여 자택에서도 재활치료의 효과가 유지되는 예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였다. 주택개조에 의해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자택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하고 있는 예가 있다.

주택개조 후 병상의 악화가 멈추거나 건강이 회복된 예도 있다. 이와 같은 주택개조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효과, 병의 치료를 돕는 효과,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의료비의 절약에 도움이 된다. 최근 노인 의료비가 비싸져 시·군·구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주택개조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3) 시설비용 절약

주택개조에 의해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가 많다. 선진국은 노인요양시설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여도 좀처럼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개조 비용을 보조하면 노인요양시설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고,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없어진다.

江戸川區(동경에 소재)의 계산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은 토지비용, 건설비용, 운영비용, 인건비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3,000~4,000만엔이 소요되지만 주택개조비용은 1건 평균 약 80만엔으로 끝나기 때문에 절약분을 다른 곳으로 돌려 복지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4)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된다

기타 주택개조 비용이 보조되면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 업무효과도 커지고 목욕서비스나 이동서비스도 편해진다. 복지·의료·보건·건축분야에서 주택개조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복지의 파위가 커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주택개조의 비용을 보조하면 예산이 추가되는 듯한 생각이 들지만 복지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주민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주택개조 비용보조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3. 주택개조 보조제도의 필요성

스웨덴·덴마크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재택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행정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비용을 보조하여 일반 가정의 자기 부담

은 거의 없다. 이것은 복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복지정책과 주택정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실정을 살펴봐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사태는 변화하였다. 나가사키현(87년)과 동경(89년)에서 보조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보조액은 적었고 자기 부담도 많았으며 소득제한이 있는 등 구미에 비해 떨어진 경향은 있었지만 이 상식을 뒤집어놓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0년 10월에 동경도의 江戸川區(인구 약 60만명)가 개조비용의 전액 보조를 시작했고 공사비의 제한도 없고 수백만 엔이 들어도 구청이 전부 지불하고 자기 부담이 없는 획기적인 제도였다. 게다가 소득세 제한도 없고 부자인 사람에게도 전액 급부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江戸川區는 "이 제도를 사용하여 간호부담을 줄여 주십시오"라고 구민에게 주택개조를 장려하였다.

그 결과 시작 직후부터 개선희망이 쇄도하여 처음 반년에는 백 건 이상의 주택개조가 실시되었다. 구청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 개조안과 공사원조도 하고 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간호가 편해져 가정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등 개조한 주민의 기쁨이 전해졌다. 구청은 이에 힘을 얻어 수천만 엔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이후에도 연 200~300건의 주택개조를 실시하고 있다.

4. 타 분야 전문가에 대한 기대(팀워크 필요)

1) 가정방문에 동행

보건소나 재가복지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일과인데 신체가 약해져 일상생활 활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인을 만나 주택개조, 복지용품 이용 등에 의해 고생을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지·의료·보건·건축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워크를 만들어, 주택개조를 할지 어떨지 정해져 있지 않은 단계에서도 노인과 가족의 승낙이 있으면 팀은 보건소 직원이나 재가복지사의 일정에 맞춰 가정방문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 집을 보면 서로 이야기하면 의외로 좋은 해결책이 나온다.

2) 보건소 간호사의 역할

나는 지금까지 보건소 직원과 함께 몇 번이고 주택개조에 개입하여 왔지만 건강 면·와상방지·자립·간호부담 경감 측면에서 보는 보건소 직원의 의견은 주택과 관계 없이도 대단히 도움이 되었다. 건축 관계자는 주택개선에만 눈이 쏠리기 쉽지만 보건소 간호사나 재가복지사에게 '생활개선을 위한 주택개선'이란 말을 몇 번이고 듣게 되어 반성한 적이 있었다. 건축 관계자만으로 주택개조에 임할 경우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 공사비가 비싸지는 않을까 라고 노인에게 불안을 느끼게 할 염려가 있다. 공무원인 보건소 직원이 지원팀에 가담하면 노인이 안심을 한다.

3) 재활 관계자의 역할

류마티즘, 파킨슨병 등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의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는 물론 보통의 병이라도 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 노인의 병이 진척되는 정도가 빠른 경우나 느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 관계자의 초보적인 의료 지식으로 개조를 한 후 병이 빨리 진행되어 주택개조를 한 곳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말도 듣는다.

4) 복지 관계자의 역할

행정 복지 담당자와 사회복지사에게는 복지제도를 이용할 경우에 협력을 받고 있다. 홈헬퍼 서비스 관계자는 가정방문으로 간호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고충과 기분을 대변하여 주고 주택개조 후의 효과도 추후 서비스를(follow up) 해준다. 복지용품과 실버 서비스 관계자에게는 최근의 복지용품 정보를 제공받고 시험적으로 실물을 노인에게 사용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하여 준다.

5) 설계자와 시공자의 역할

설계자와 시공자의 기술과 열의가 부족한 경우 주택개조는 곤란하다.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는 신축, 재건축, 개축의 경우도 있지만 작은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돈벌이가 되지 않고, 주택개조팀의 연간 수입을 보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술과 기능을 높이지 않는 한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또 하나는 복지·의료·보건·건축의 연계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타 분야의 사람과 팀을 만들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설계자와 시공자의 힘을 절대 발휘할 수 없다. 설계자와 시공자는 자동차의 양측이고 양자가 서로 존중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연계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개조

지원 팀워크가 필요하다. 이것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 장래를 예측한 개선, 증상이 변화된 경우의 개선
- 복지용구 이용을 위한 주택개조
- 개선안의 작성비용 및 설계비용의 보장

5. 주택개조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1) 교과서나 메뉴얼식 주택개조는 실패한다.

2) 실패하면서 배운다(실패를 두려워 말라)

회사 일에 열심이던 남편이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부인은 근처의 시공업체에 부탁하여 퇴원하기 전에 5,000만 원이나 들여 개조를 하였다. 그런데 퇴원한 날부터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관에는 40cm 정도의 마루귀틀이 있고 화장실과 욕실에는 커다란 단차가 있고 출입구의 폭도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곤란한 부인은 현관용 경사로를 만들어 오르내렸다. 화장실과 욕실에서 남편을 부축하여 간호하였는데 1개월도 되지 않아 허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고 간병인이 없게 되자 남편도 병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외에도 핸드레일을 설치하였지만 위치가 너무 멀어 사용하지 않게 되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최대의 원인은 그 사람의 신체 상황과 휠체어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개조했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는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개조한들 도움이 되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 시공업자 중에는 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도 현관 마루귀틀은 원래 만들어야 하고 욕실의 단차도 만들어야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습관이 남아있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개조하는 사람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3) 많은 전문지식 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병이나 사고로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남아있는 기능은 무엇인지, 휠체어 생활을 생각해야 하는지, 정신

상태는 어떨지 등 주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재활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신기능 상태와 향후 변화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노인과 가족의 기분을 존중해야 하고 가족에게 인내와 불편을 강요하는 주택개조는 좋지 않다. 가능한 한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비용부담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거개선을 하여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업자나 건축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무리이고, 또한 간호사·복지전문가·의사·재활전문가도 마찬가지이다. 주택개조(주거개선)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복지·의료·보건·건축분야 전문가가 팀워크를 이루어 지원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6. 화장실 개선방법

1) 주택개조 욕구

신체가 부자유스러우면 화장실이나 목욕이 힘들어진다. 하지만 노인은 주택개조를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몸짓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가족이 그 신호를 읽어 “주택개조를 할까요?” 라고 말을 걸어도 “아직은 괜찮아” 라고 사양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이다.

2) 가장 곤란한 배설문제

일상 생활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첫번째 배설, 둘째는 목욕 그리고 외출, 식사, 취침 등이다. 자력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더욱 늙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된 사람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뼈아픈 고통이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은 화장실에서 걸터앉거나 일어서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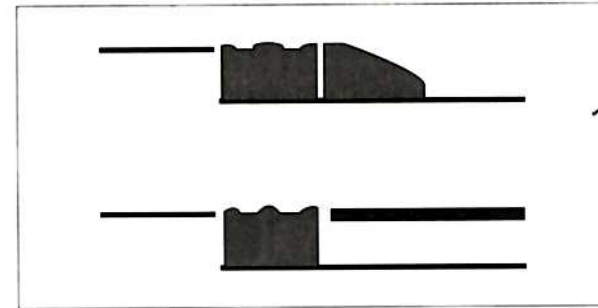
해결방법의 첫번째는 화장실 내부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음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하면 효과는 절대적이다.

① 손잡이(Handrail)를 설치한다.

<표 4> 장애별로 필요한 핸드레일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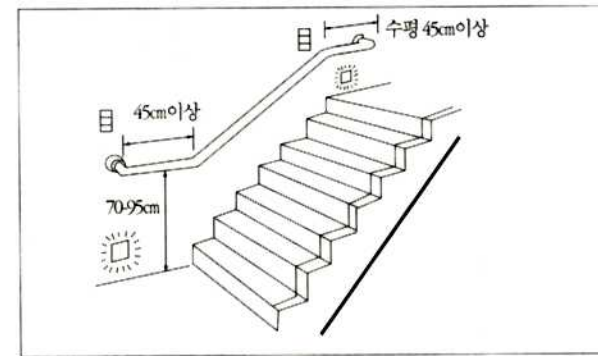
| 병명 | 간병인 | 휠체어종류 | 필요한 핸드레일 |
|------|-----|-------|----------|
| 척수손상 | 없음 | 수동 | L형+I형 |
| | 있음 | 수동 | I형 |
| 뇌졸중 | 없음 | 수동 | L형+I형 |
| | 있음 | 수동 | L형+I형 |
| | 없음 | 수동 | L형 |
| 뇌성마비 | 없음 | 자동 | L형+I형 |
| 류머티즘 | 없음 | 자동 | 불필요 |

② 출입구와 통로의 단차를 적게 한다.



<그림 1> 단차 해소법

③ 밤에도 밝게 한다(조명 스위치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그림 2> 핸드레일은 계단바닥면까지 연장되어 있어야 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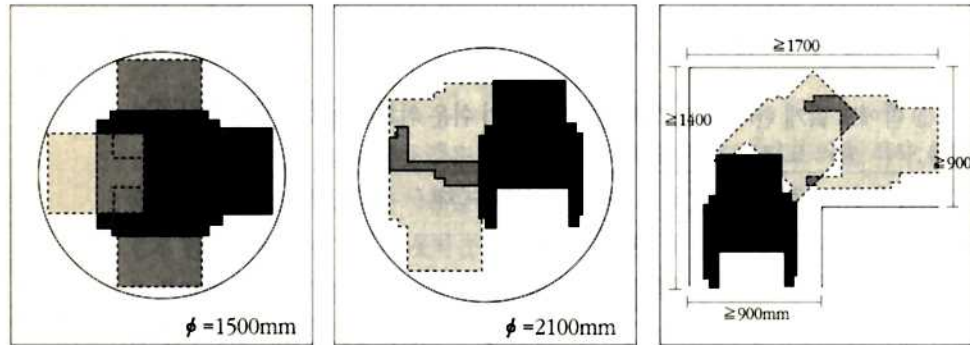
- ④ 문을 열기 쉽게 한다.
- ⑤ 문은 안에서 바깥으로 열리도록 한다.
- ⑥ 화장실은 재래식변기를 양변기로 바꾼다(앉거나 일어서는 것이 편함)
- ⑦ 화장지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로 옮긴다.
- ⑧ 화장실을 넓게 한다.
- ⑨ 비데(세정기)를 설치한다.

둘째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선 항목으로는 전술한 ①~④까지와 발에 걸리거나 부딪히기 쉬운 것을 제거하고 침실과 화장실을 근접시키는 것이다.

3) 개별적인 신체에 적합하게

이상과 같은 개선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하면 더욱 더 효과가 올라간다.

- ① 침대를 이용하여 그 옆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앉거나 일어서는 것을 편안하게 한다.
- ② 휠체어·보행기·지팡이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통로를 개선한다.



A. 최소 회전원 좌우의 휠체어 바퀴를 각각 전후에 역회전시켜 회전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
 B. 휠체어의 한쪽 방향을 축으로 회전하는 방법으로 편마비 등으로 좌우의 어느 한쪽만 휠체어 바퀴를 구동하는 경우
 C. 90도 각도 회전에 필요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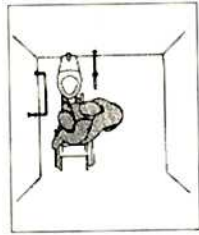
- ③ 본인의 심신 기능에 맞춰서 개선한다(재활전문가의 도움 필요; 예1) 예2).
- ④ 주택개조는 매뉴얼대로 하면 실패(나의 경험에 의하면 매뉴얼 사용자는 주로

초보자나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척 책만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도 비싼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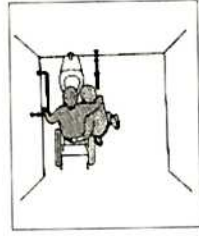
예 1) 적수손상자

- 문을 열고 수동 휠체어로 들어간다.
- 변기에 접근하여 브레이크를 잠근다.
- 오른손은 L형 핸드레일 옆에 위치, 휠체어 팔 받침대를 잡는다.
- 신체를 들어올리면서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이동을 잡는다.
- 휠체어를 비켜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좌우의 핸드레일 몸의 균형을 잡는다.
- 용변 후 변기에 앉은 채로 세면기에 손을 씻는다. 그때 팔꿈치를 핸드레일에 올리면서 앉은 자세의 균형을 잡는다.
- 오른손으로 L형 핸드레일 옆에 위치, 왼손으로 휠체어 팔 받침대를 붙잡는다.
- 그대로 신체를 들어올리며 회전시킴
- 휠체어를 이동한다
- 세면기에 접근
- 방향을 회전한다
- 문을 열고 화장실을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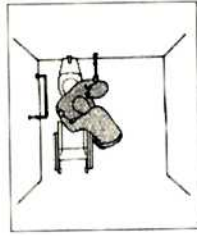
예 2) 뇌졸중(아반신마비 · 간병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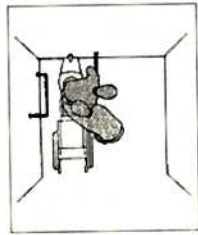
· 변기에 접근하여 브레이크를 잠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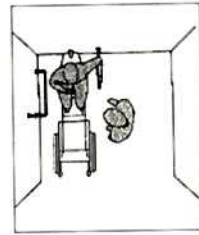
· 왼손으로 L형 핸드레일 세로 위치를 쥐게 하고 들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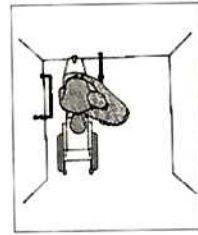
· 왼손으로 L형 핸드레일 옆 위치로 바꿔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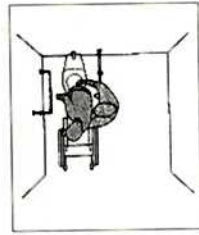
· 왼발을 축으로 몸을 돌리면서 반대측의 핸드레일을 바꿔잡는다.



· 왼손으로 핸드레일을 붙잡은 채로 변기에 앉아 앉은 자세의 균형을 잡는다.



· 왼손으로 옆 핸드레일을 붙잡고 변기에서 일어난다.



· 휠체어의 팔 받침대로 바꿔잡는다.



· 왼쪽의 팔 받침대를 붙잡은 채로 왼발을 축으로 몸을 돌리면서 휠체어에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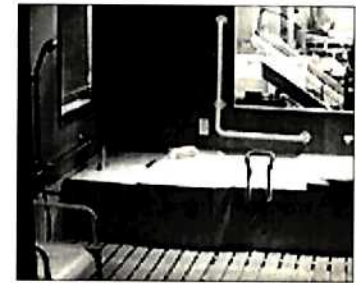
7. 목욕을 위한 개선방법

1) 목욕을 방해하는 요인

한국 주택의 욕실은 우선 단차가 있고 핸드레일이 없으며 바닥은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다. 욕실내부는 좁고 대부분의 욕조는 좁고 깊은 구조로 되어 있어 간병인이 옆에서 거들기가 힘들다. 또한 침실에서 욕실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 신체와 주택에 맞추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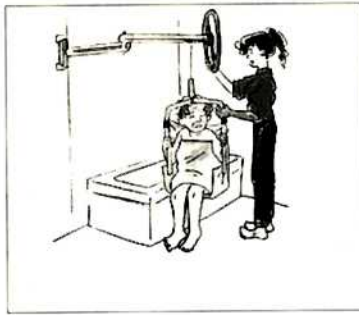
- ① 침실, 거실, 복도, 욕실, 욕조에 들어가 동작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② 통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힐 염려가 있는 물건을 제거한다.
- ③ 욕실 바닥면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 ④ 출입구의 단차를 적게 한다. 바닥면에 단차가 생길 경우 바닥면에 플라스틱 발판 등을 설치한다.
- ⑤ 문은 안에서 바깥으로 열리도록 한다. 바깥에서 안으로 열면 노인이 넘어진 경우에 열기 어렵고, 자물쇠는 바깥에서 열리는 것으로 한다.
- ⑥ 욕조 테두리는 의자와 같은 높이가 최적이고 의자에 걸터앉아 욕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 편안하고 넘어질 염려가 적다. 그렇지만 이렇게 권해도 선 채로 욕조에 들어가는 노인이 많다.
- ⑦ 욕실은 간병인이 간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⑧ 침실과 욕실을 근접시킨다.



<사진 2> 환자의 신체 상황에 맞게 욕실 개조

3) 편리한 재활보조기구

욕실 벽이 약하여도 핸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신체가 허약한 노인을 위해 개발된 욕조가 있고 또한 재활보조기구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다. 이러한 물건을 사용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하게 된다. 수도의 수



<그림 3> 신체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리프트를 이용하면 편리



<그림 4> 바닥 전체를 개조하기 보다 단차해 소대를 만들면 저비용으로 이동이 가능.

압을 이용한 입욕리프트, 천정주행 리프트, 바닥주행식 리프트 등이 있다.

노인은 어깨까지 뜨거운 물에 잠기지 않으면 목욕했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하는 습관이 있지만 욕실 난방을 하면 겨울에도 몸을 떨지 않고 샤워를 할 수 있다.

8. 외출·식사·취침을 위한 개선 사례 (복지·의료·보건·건축의 연계)

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로 외출할 수 있도록 했더니 쇼핑과 산보의 횟수가 증가하고 몸단장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간병인도 비만으로 곤란하였는데 휠체어를 밀고 걷는 일이 늘어나 체중이 감소하게 되었다.

② 침실에서 현관까지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외출할 수 있게 되어 이웃 사람들이 때때로 말을 걸어왔다.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으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마치 새 세상을 만난 듯이 표정이 바뀌었다. 간병인의 부담도 가벼워져 간병인에게도 편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③ 이불에서 침대로 바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서고 앉는 것이 편해졌고 이전에는 침대생활이 많았으나 부엌과 식탁에 갈 수 있게 되어 식욕도 생기고 편식도 줄어들고 얼굴색이 좋아졌다.

④ 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 있는 방으로 옮겨 계절감 등 바깥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으로 삶의 의욕도 생기게 되었다.

9. 배설·목욕을 위한 개선 사례

① 이불에서 침대로 바꿔 화장실에 가는 것이 편해져 요실금으로 이불과 바닥을 더럽히는 일이 적어졌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하게 되었다.

② 스스로 배설할 수 있게 되어 가족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적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살아가는 의욕도 회복되었다. 단념이 희망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뇌졸중이 되어 퇴원 후 목욕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목욕대를 만들어 스스로 목욕할 수 있게 되었다. 간병인의 사정에 맞추지 않아도 본인이 목욕하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어 목욕을 좋아하는 욕구도 생겼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자신이 생기게 되고 적극적으로 변화였고 간병인도 편해져 기뻐하였다.

<표 5> 무장애를 위한 행위별 총괄표

| 거주자의 행위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 지나간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에 걸리지 않도록 단차를 없앤다. 높이 차는 경사로로 해결한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마감재로 한다. 손잡이를 설치한다 (손에 잡기 쉬운 직경 35mm 정도). 폭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프로치 : 경사로의 경사는 1/12 이하(단차가 낮은 경우는 완화할 수 있다)로 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넓이가 있으면 좋다. 인터폰을 설치 현관 : 현관 마루 귀틀이 없는 것이 좋지만 설치할 경우 20cm 이하로 하고 핸드레일을 부착하여 발 아래를 밝게 한다. 휠체어를 갈아 탈 수 있는 보조구가 있으면 좋다.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우편함이 좋다. 복도, 실내통로부 : 휠체어 사용을 생각하면 유효폭원은 85cm 이상이 필요하다. 미닫이문이 좋으나 여닫이문일 경우는 레바핸들로 하고 문을 여는 쪽에 휠체어 조작용 공간을 확보한다. 계단 : 경사 45도 이하가 기본, 가능하면 계단바닥면은 24cm 이상 계단턱은 20cm 이하로 한다. 눈사람과 핸드레일을 설치(내려올 때의 핸드레일에 더욱 신중). 슬리퍼로 오르내리는 것은 위험하므로 삼가고 밑을 밝게 함. |
| 한다·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넓적한 공간으로 하여 여러 용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실, 식당 :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칸막이와 문을 만들어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반드시 바닥 난방을 하여 넓게 사용 |
| 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 확보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실 : 침대식이 편하고 휠체어의 회전공간을 두어 화장실, 욕실은 가까운 곳에 둔다. 긴급통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둔다. |

참고문헌

- 金榮敏. "치매성노인의 생활행동과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거주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일본건축학회近畿支部연구보고집』. 1995.
- 金榮敏, 水野弘之. 『재택치매노인을 위한 거주환경개선』. 일본가정학회. 1995.
- 金榮敏, 水野弘之, 足立 啓, 谷垣靜子, 小野 泉, 大橋美幸 공저. 『치매성노인의 재택케어를 위한 거주 환경 개선-배회 및 출입문에 관한 물적대처』. 일본가정학회. 1997.
- 金榮敏, 水野弘之, 足立 啓, 谷垣靜子, 小野 泉, 大橋美幸 공저. 『치매성노인의 재택케어를 위한 거주 환경 개선-방화 및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물적대처』. 일본가정학회. 1997.
- 金榮敏, 水野弘之, 足立 啓, 谷垣靜子, 小野 泉, 大橋美幸 공저. 『치매성노인과 주거-생활공간의 변화 영향 및 간호고충』. 일본가정학회. 1997.
- 金榮敏, 水野弘之, 足立 啓, 谷垣靜子, 小野 泉, 大橋美幸 공저. 『치매성노인의 재택케어를 위한 거주 환경 개선-실금문제의 물적대처』. 일본가정학회. 1997.
- 金榮敏, 水野弘之, 足立 啓, 谷垣靜子, 小野 泉, 大橋美幸 공저. 『재택치매성노인의 배설행동에 관한 생활 공간의 시점에서 분석』. 일본가정학회. 1997.
- 金榮敏. 『치매성노인의 생활장애와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치료적 환경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적 연구』. 일본경도부립대학 석사학위논문. 1996.
- 金榮敏, 水野弘之. 『치매성노인의 생활장애와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사)일본치매가족협회 월보. 1996.3~1997.3.

주1) 고령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인과 같은 말이다.

주2)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고쳤다.

주3) 와상상태는 주로 생활공간이 침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부터 스스로 식사등이 가능한 경우까지가 포함이 된다. 즉 침대에서 주로 생활하는 상태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주택개조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정성진

파라다이스복지재단 대리

- I.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필요성
- II.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개요 -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을 중심으로
- III.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현황
- IV. 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 사례를 중심으로
- V. 미국 장애인법에 나타난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I.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있어서 '집 밖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아직도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4월의 목련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라디오에서 들던 봄소식과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경복궁의 찬란한 봄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장애인은 나이 서른이 되어 바다를 처음 보았다면서 그 감동을 글로 적어 보낸 적도 있었다. 또 어느 장애인은 비닐하우스에서 온기도 없이 지내면서 독립을 자축하기도 했다. 이렇게 집 밖을 나가기만 하면 직장도 얻고 친구도 생긴다는, 환상 속에서라도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집 밖의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조차 장애인은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기본적인 삶은 생리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스스로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 힘으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남의 도움은 받더라도 재활복지용품이나 편의시설의 완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안정감 있게 일상적인 활동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완벽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던 장애인 가정이 정부보조로 양변기를 설치하고 난 뒤 장애인 스스로 생리현상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가족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화장실과 부엌 등이 개조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은 생리현상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음식을 해먹고 물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 곧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조차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용 일부 보조를 2,000년에 실시한다고 한다.

집 안에만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재가장애인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쳐두고 집 밖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만이라도 좀더 자유롭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일단

뒤로 미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은 장애인이 사는 자신의 주택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펼쳐 온 파라다이스복지재단(구 우경복지재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주택 개조현황과 사례를 통해 가정 내 편의시설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개요—파라다이스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겪는 이동의 불편을 해결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함이었으며, 주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등록·미등록 영세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도까지 진행된 사항은 전국적으로 1,591가구 및 시설의 신청을 받아 876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총 8억원이 지원되었다(1995.3.21 - 1997.12.30). 그리고 총 876가구 중 시설지원 57개소가 포함되었다.

신청자 수에 비해 완료한 가구 수가 적은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입식부엌, 지붕개량, 집안 구조변경, 보일러 시설 등—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아파트의 경우 제약에 따른 미설시(손잡이 설치, 화장실 문 확장 등),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건물주의 협조부족 등으로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원한 가구 중에서도 입식부엌, 보일러 시설, 구조변경 등은 지원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지원대상 중 장애종류별로는 전체의 95% 정도가 지체장애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순이었다. 지역별 접수상태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도심에 비해 낮고 주택구조에 있어서도 아파트나 연립 등 도시형 주택에 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먼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재단의 사업이 장애인신문 등에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소개한 관계로 인한 정보의 부족과 사회복지관의 도심 편중으로 인한 사회복지관을 통한 홍보의 부재, 기타 여타의 매체 등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택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심의 아파트, 연립, 주택 등에 비해 건물이 견고하지 않고 화장실이나 욕실의 상태가 불량하고 대체적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휠체어 이동이 불편함과, 계단이나 턱이 높은 관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표 1> 지역별 접수 및 완료 총괄표

| | 서울 | 경기/인천 | 충청 | 전라 | 경북/대구 | 경남/부산 | 강원 | 제주 | 합계 |
|----|-----|-------|-----|-----|-------|-------|----|----|-------|
| 접수 | 324 | 281 | 138 | 182 | 252 | 262 | 99 | 53 | 1,591 |
| 완료 | 201 | 162 | 68 | 81 | 150 | 126 | 65 | 23 | 876 |

이러한 사업을 소개하고 접수를 받는 방법을 1차년도(1995년)에는 장애인 관련 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신문사와 재단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2차년도부터는 장애인 관련 신문에 그 동안의 사업에 관한 내용의 기사를 통하여 재단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단체 그리고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대상자를 추천받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절차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 가급적 간편하게 해서 전화나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일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전화상으로 여부를 결정하기에 문제가 있는 대상은 그 지역 사업진행 시 시공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주)파라다이스 건설산업과 협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공, 감리,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III.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현황

1. 사업연도별 특징

1) 1995년도(1차년도)

편의시설 지원사업의 초기예산은 5천만원이었으나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약 2억원의 예산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한 컴퓨터 테크놀로지 사업과 가정 내 또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 문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는 아직 편의시설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여 어떠한 편의시설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휠체어가 이동하기 편하게 하려면 계단이나 문턱에 경사로나 램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이용이 불편한 좁은 화장실의 문을 넓혀 이용의 편리를 주는 것, 앉고 서고 이동할 때 손잡이가 필요하다는 것 등 몇 가지만을 인식한 가운데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때 설치하고자 했던 편의시설로는 좌변기 및 욕조용 손잡이, 램프, 미끄럼방지대, 출입문 개조, 화장실 문 확장 등 6가지 종목이었다.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도 시행착오가 많았다. 미끄럼방지대는 화장실의 물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지고, 램프는 목재선정의 문제로 뒤틀리고, 손잡이와 화장실 문 확장은 건축주나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건물의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여 공문을 통하여 협조를 구하고 실시해야 했다. 가구당 지원금액도 계획수립시 40만원에서 70만원 가량이었고, 많은 경우는 2백만원이 소요된 곳도 상당수 있었다.

도심의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와 달리 농촌지역은 열악한 화장실 사정으로 편의시설이라는 개념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화장실이 있어도 와변기 시설이 대부분이고 토벽이나 미장이 되지 않은 벽이라서 손잡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은 시급한 가구만 선정하여 화장실을 신축하였다.

첫해는 사업을 하면서 베란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농촌지역 화장실 신축시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96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일부를 반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역별 접수와 완료상태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접수 및 완료 현황

1995년도

| | 서울 | 경기인천 | 충청 | 전라 | 경북대구 | 경남부산 | 강원 | 제주 | 합계 |
|----|----|------|----|----|------|------|----|----|-----|
| 접수 | 87 | 78 | 65 | 52 | 130 | 78 | 28 | 29 | 547 |
| 완료 | 49 | 47 | 28 | 12 | 92 | 41 | 15 | - | 284 |

주택구조별 형태는 아파트 113곳, 일반주택 147곳, 시설 24곳으로 일반주택이 아파트보다 많이 나타났다. 접수는 신문사를 통한 접수와 사회복지관을 통한 접수, 자치단체를 통한 접수, 사회단체를 통한 접수를 병행하였다. 1년간 진행되면서 사회복지관과 자치단체를 통한 접수와 진행이 대상자 선정과 편의시설 설치시 안내 및 대상자의 욕구, 사후관리 등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내용

| 종류 | 손잡이 | | | | | | 램프 | 경사로 | 미끄럼방지대 | 화장실 | | 베란다 | 핸드레일 |
|----|-----|-----|-----|----|-----|-----|-----|-----|--------|-----|------|-----|------|
| | I | 다용도 | T | 회전 | c | 세면기 | | | | 문확장 | 신축보수 | | |
| 수량 | 385 | 188 | 122 | 4 | 139 | 11 | 140 | 88 | 143 | 23 | 45 | 8 | 6 |

총 집행금액은 2억9백만원이며 가구당 평균 금액은 735,915원으로 예산보다는 평균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대다수(95%)를 차지하였다.

2) 1996년도(2차년도)

1차년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아파트의 베란다 마루 설치와 농촌화장실에 수세식 화장실 시설을 한 것과, 도시개발공사 아파트가 많아 미끄럼방지대만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주부들을 위하여 싱크대 개조가 추가되었다.

<표 4> 지역별 접수 및 완료 현황(2차년도)

| | 서울 | 경기인천 | 충청 | 전라 | 경북대구 | 경남부산 | 강원 | 제주 | 합계 |
|----|-----|------|----|----|------|------|----|----|-----|
| 접수 | 100 | 104 | 23 | 60 | 98 | 98 | 38 | 23 | 544 |
| 완료 | 64 | 46 | 13 | 42 | 58 | 48 | 33 | 23 | 327 |

아파트 232곳, 일반주택 74곳, 시설 21곳으로 아파트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아파트 단지라는 특성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 서비스의 일종으로 편의시설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같은 단지내 가정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상태를 보고 신청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제공하는 입장에서 좋은 점들이 많다.

<표 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내용

| 종류 | 손잡이 | | | | | | 램프 | 경사로 | 미끄럼 방지대 | 화장실 | | 베란다 | 핸드 레일 | 싱크대 |
|----|-----|-----|----|----|----|-----|----|-----|---------|-----|------|-----|-------|-----|
| | I | 다용도 | T | 회전 | c | 세면기 | | | | 문확장 | 신축보수 | | | |
| 수량 | 195 | 70 | 64 | 4 | 30 | | 36 | 30 | 206 | 11 | 36 | 55 | 53 | 12 |

세대당 평균 약 60만원으로 2차년도 총 사업비에 비하여 가구수가 증가한 것은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는 손잡이나 화장실 문을 확장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대만 설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95%)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3) 1997년도(3차년도)

3차년도의 특징은 베란다 보수를 사업에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세탁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이동과 운동을 위한 핸드레일의 설치가 많았고 싱크대 개조가 사업에 반영되는 등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기독교텔레비전의 협찬으로 장애인 프로그램인 '사랑으로 여는 세상'에 '편의시설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라는 코너를 통해 일 주일에 한 가정씩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변화된 모습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특징이다.

<표 6> 지역별 접수 및 완료 현황(3차년도)

| | 서울 | 경기인천 | 충청 | 전라 | 경북대구 | 경남부산 | 강원 | 제주 | 합계 |
|----|-----|------|----|----|------|------|----|----|-----|
| 접수 | 137 | 99 | 50 | 70 | 24 | 86 | 33 | 1 | 500 |
| 완료 | 88 | 69 | 27 | 27 | - | 37 | 17 | - | 265 |

아파트 170곳, 일반 83곳, 시설 12곳은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내용

| 종류 | 손잡이 | | | | | | 램프 | 경사로 | 미끄럼 방지대 | 화장실 | | 베란다 | 핸드 레일 | 싱크대 |
|----|-----|-----|----|----|-----|-----|----|-----|---------|-----|------|-----|-------|-----|
| | I | 다용도 | T | 회전 | c | 세면기 | | | | 문확장 | 신축보수 | | | |
| 수량 | 89 | 51 | 13 | 9 | 112 | 4 | 77 | 16 | 172 | 29 | 19 | 73 | 42 | 40 |

세대당 평균 약 90만원으로 상승한 것은 싱크대 설치, 샤워기 및 수도꼭지 교환 등이 추가되고 기독교 텔레비전 협찬에 따라 종합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한 경우가 많아 가구당 단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90% 이상이며 정신지체, 시각 및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

2. 평가와 바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예산 및 사업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은 공공이용시설이 아닌 가정에서의 이동권 확보를 95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넓게 확산되어 실제로 장애인들의 가정 내에서의 편리한 생활보장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자력으로 주택개조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가정 내의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성을 절실히 알면서도 몇십만원의 비용을 투자할 수 없음을 자주 목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가정형편이 이보다 나은 경우도 가족의 이해부족과 비용의 문제로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98년 4월 11일 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최소한 정부기관, 구청 등 공공건물이나 기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 그리고 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조차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용 일부보조를 2,000년에 시작함으로써 장애인주택 개조는 현재보다는 다소 개선은 되겠지만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나 산재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그들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라도 정부에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업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장애인주택 개조와 같은 일련의 사업이 폭넓게 확대되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이 가정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처음으로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을 시작한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의 바람이다.

IV. 장애인가정 내 편의시설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 사례를 중심으로

이 장은 기독교텔레비전의 '사랑으로 여는 세상'에 출연했던 분들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과(전체 33가정 중 26가정) 컴퓨터 통신 나누누리의 장애우복지실천모임 '나누리(NANURI)'의 사랑으로 여는 세상에 소개되었던 내용(33가정 중 29가정) 기초로 하였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정 내 편의시설에 대한 논의는 통계처리하기에는 사례 수도 적고 장애정도와 유형도 다양하며 개선된 편의시설도 장애유형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가정 내 편의시설이 바뀌면 장애인의 삶이 변하는 과정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1. 편의시설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96%) 가정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 생활이 확 달라졌다고 응답하였다. "혼자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의 도움을 받아도 전처럼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외출을 아무 때나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엌일 하기가 편해져서 요리가 취미가 되었어요" "편해지고 시간이 절약이 되었다" "혼자 지내기가 수월해졌다" "샤워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후의 달라진 생활내용들이다.

또한 높고 불편한 싱크대와 높은 수납장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심지어는 근육이 늘어나 고생을 했던 여성장애인은 싱크대가 낮아서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가스레인지대도 낮아져서 위협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즉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거나 병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했더니 이제는 혼자서(전에는 부인의 등에 업혀서) 운동 삼아 지하실로 걸어서 내려가게 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컴퓨터통신 나누리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 편의시설로 인한 장애인의 생활이 달라진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어 소개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으로 남편과 함께 장애인 작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대요. 그 곳 복지관 선생님의 소개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P씨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대요, 집안도 일물일설 잘 운영하실 뿐 아니라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도 차지하는 등 재주가 너무나 많으신 분이세요. 그동안 P씨가 가장 불편한 부분은 싱크대였는데요, 싱크대가 너무 높고 공간이 좁아서 팔과 허리도 아프셨구요, 또한 베란다의 턱이 높아 출입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좋아하는 화초에 물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죠.

point 1.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싱크대를 새로 바꾼다.

point 2. 수도꼭지를 원터치로 바꾼다.

point 3. 베란대에 마루를 깔다.

싱크대가 정말 확 바졌는데요. 휠체어 높이에 맞춰 아주 낮게 제작하구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이동범위도 줄였습니다. 주방일 하는 모습이 전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또 베란다에 마루를 깔아서 가까이서 파란 가을하늘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살다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몸이 불편한 관계로 발생하는 불편한 주변환경들 때문에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이 많아진다면 너무나 속상하겠죠?

2. 자존심이 회복되었다

하반신마비로 생리적인 현상조차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한 장애인은 화장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 주고 휠체어높이로 변기를 높이고 난 뒤에는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하였다.

한 남성장애인은 체격도 우람해서 목욕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욕조를 없애고 원터치 샤워기를 설치함으로써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되어 전보다 훨씬 미남이 되었다고 한다. 외출을 할 때마다 전쟁처럼 치뤄야 하는 일로서 특히 겨울에는 샤워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여성장애인은 집안식구들이 직장을 가는 낮에는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유아용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한다고 한다. 화장실 턱을 없애고 매트 깔고 난 뒤 조금 느리고 힘들기는 하나 아무도 없는 낮에는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간단한 편의시설 하나라도 장애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K씨는 얼마 전 사고로 하반신에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소문을 듣고 편의시설 개조 신청을 해 주신 거죠. 행운의 주인공 K씨는 요즘 운동도 하고 책도 보시면서 생활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K씨 곁에는 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부인이 계셨구요. 한참 재물을 떨어대는 두 아이 덕에 얼굴에 웃음이 가실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K씨의 가장 큰 불편은 바로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문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란다를 화장실 대용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베란다에서 세안뿐 아니라 샤워, 변기이용까지 하시니 거 신사체면이 말이 아니셨지요. 게다가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서 샤워를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K씨를 위한 편의시설!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point 1. 현관입구와 문턱에 램프시설을 한다.

point 2.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문을 넓힌다.

point 3. 욕조를 떼어내고 공간을 넓힌다.

point 4. 베란다에 마루를 깐다.

자, 이제 불편한 베란다를 화장실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구요, 손잡이, 샤워기 등 화장실 안의 편의시설 설치가 무척 잘 되어서 K씨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만족해 하셨어요. 베란다에 마루를 깔아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 단단히 한몫 하게 됐지요.

3. 인간답게 살게 되다

가정 내에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나이 서른이 넘도록 세수부터 심지어 뒷처리까지 가족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기에 가족들의 기분상태 등을 살피면서 세수나 샤워 등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알아서 싫다고 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은 멋진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고 싶지만 치마 대신에 바지를 입어야만 하고 지퍼 달린 바지보다는 추리닝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간단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혼자서 샤워를 하고 세수 등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입고 벗기 편한 복장들이 많다면 자신들의 개성을 맘껏 뽐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기 전에 온전한 여성과 남성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 더 멋진 남성과 여성으로, 어느 한 남성장애인은 원터치 샤워기를 설치하고 난 뒤 샤워하는 횟수와 머리 감는 빈도가 증가되었고 이제는 모임에 나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부득이 샤워를 못하고 외출을 하면 냄새가 날까봐 휠체어를 미는 자원활동가에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친 후 처음으로 혼자서 샤워를 했을 때의 그 기분이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현관의 턱으로 인해 혼자서는 외출을 못하고 집안식구들이 있을 때만 외출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 현관의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한다면 집안식구와는 상관없이 외출을 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바깥으로 향한 장애물을 과감히 없애는 것이 편의시설의 설치이다. 다음의 사례는 편의시설의 인간

다음을 선명하게 설명을 해 준다.

L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외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L씨 집은 구멍가게를 하 시거든요. 그 구멍가게에 딸려 있는 방에서 생활을 하신답니다. 근데 화장실 및 세면시설이 모두 밖에 있어서요, 번번이 누님이 물을 떠서 방까지 가져오셔야 했고, 외출을 할 때마다 동 생분에게 업혀야 하니 이거 L씨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L씨의 체면을 꼭 짝 살려 드리기 위해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 point 1. 싱크대를 치우고 세면대를 단다.
- point 2. 침대 옆에 핸드레일을 단다.
- point 3. 벽을 뚫어 경사로를 만든다.

L씨 맥의 변화 중 가장 신났던 건 바로 point 3인데요. L씨가 생활하게 된 방에서 바로 벽을 뚫어 외부로 통할 수 있는 경사로를 죽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문 하나만 열면 곧 바로 휠체어를 타시고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단독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H씨는 간단한 램프시설은 스스로 이용하고 계시기 도 했지만 집안 곳곳에 워낙 턱과 계단이 많아서 외출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죠. 하지 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point 1. 경사로를 설치하고 대문의 턱을 잘라낸다.
- point 2. 현관에서 대문까지 경사로를 쪽 뽑아낸다.
- point 3. 현관램프를 완만하게 새로 설치한다.

주택의 경위 대문 밑에 턱이 있어서 번번이 대문 전체를 열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편을 싹 제거해 드렸어요. 계단 자체를 박멸시켜서(?) 외출이 한결 편리하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4.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장애인의 독립은 언제든지, 남의 도움을 받지않고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가 능하다. 남의 도움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 기 위해서는 보장구와 재활복지용품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식과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한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만 했던 장애인이 스스로, 언제든지, 원하는 때 일상적인 삶을 처리한다면 자립 기반 은 마련될 것이다. 호주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독립하 여 살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른손뿐이었다. 식사는 장애인이 주문하면 배달되는 도시락으로 해결 하고, 가끔은 손수 해먹기도 한다. 또한 전동휠체어로 가고 싶은 곳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물론 샤워 등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욕실이 개조된 것이 독립이 가능했던 주 요인이다.

뇌성마비 장애로 대부분 앉은 상태로 생활하시는데 요즘은 컴퓨터를 기증받아 그 재미에 푹 빠지셨더군요. 항상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J씨. 하지만 이제는 화장실 출입 및 세안 등 간단한 일들은 J씨 혼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보실까요?

- point 1. 컴퓨터 책상을 키에 맞추어 다시 만든다.
- point 2. 수도꼭지를 원터치로 바꾸고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point 3. 현관 문턱과 화장실에 램프시설을 한다.

라면 박스로 대체했던 컴퓨터 책상을 J씨 앉은 키에 맞게 새로 짜 드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 게 되었어요. 화장실 문턱에 램프시설을 하고 수도꼭지를 원터치로 바꿔서 혼자서도 세안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현관에 램프 시설을 해서 밖에서부터 마루까지 이동이 수월해졌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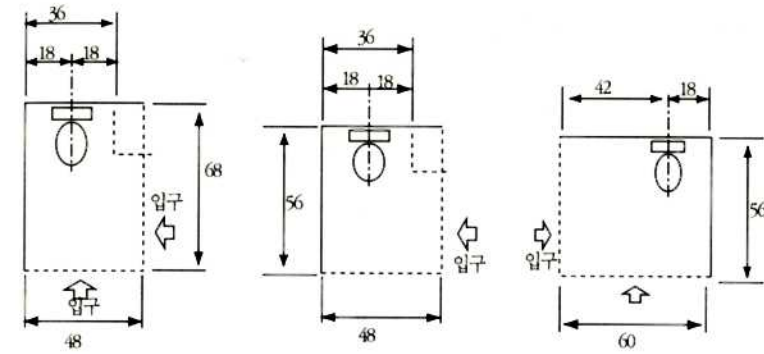
V. 미국 장애인법에 나타난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아래 번역분은 미국장애인법지침서(ADA Handbook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부록 중(Appendix C)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한 접근권의 기준에 나타난 장애인주택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장애인 주택개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지침들이 없는 현상에서 하나의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표준신장, 팔길이, 앉은 키 등이 우리나라의 표준치와 다르다는 등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ADA를 전체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른 것이 아니라서 전체적인 연관성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택까지 접근하는 접근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시설, 우편함 등과 같은 부분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앞장의 항목에 따른다고 했을 경우 소개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장애인 주택에 필요한 설비들에 관한 그림과 필요한 항목만 열거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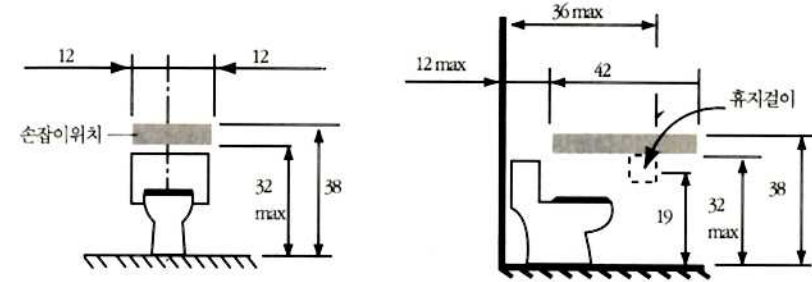
화장실 / 욕실겸용

1) 수납장

- 욕실용품수납장 : 대부분 수납장은 욕실의 오른쪽이나 왼쪽의 한쪽에 설치되지만 <그림1>과 같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입구와 세면대 주위에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변기 위에 있는 수납장의 높이는 최소한 15인치(380mm)가 되어야 하며 변기에 앉았을 경우의 최고 높이로 측정되어지는 19인치(485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그림2>와 같이 변기 후면과 옆면에 잡을 수 있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최소한 바닥으로부터 32인치이상, 38인치 이하의 공간(그림의 네모난 부분)에 설치를 한다.
- 화장실용 휴지는 <그림2>와 같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그림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활동공간확보



<그림 2> 손잡이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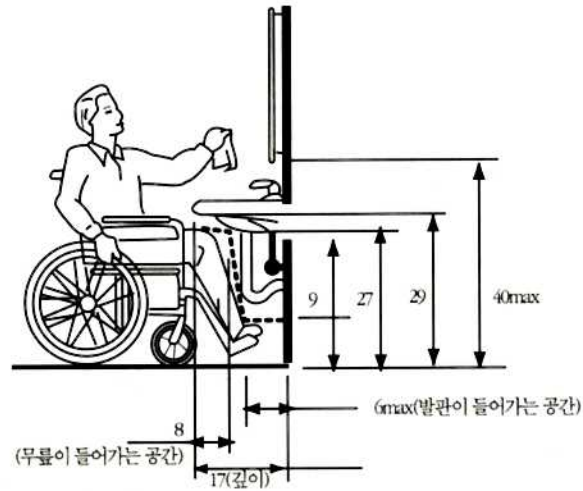
※ 본 그림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inch(≈2.5cm)이고 36min→ 최소 36inch를 표시하는데 본 그림에서는 단지 숫자만 나열했다. 단 max는 최대치로 표시하였다.

2) 세면대, 거울 그리고 구급약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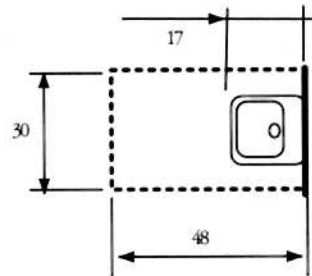
- 세면대는 <그림3>과 같이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그림3>과 같이 아래를 비워둔다. 수도파이프(배수용)는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는 최소9인치 이상, 벽으로부터는 6인치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면대는 높이40인치, 깊이 최소 8인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구급약상자가 세면대 위에 설치된다면 구급약상자의 밑면이 44인치(1120mm)

보다 아래에 설치되어야 한다.

- 세면대 높이는 최소27인치부터 최대 29인치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세면대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세면대를 제외한 활동공간은 적어도 17인치, 30인치는 되어야 한다(그림4)



<그림 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하부의 공간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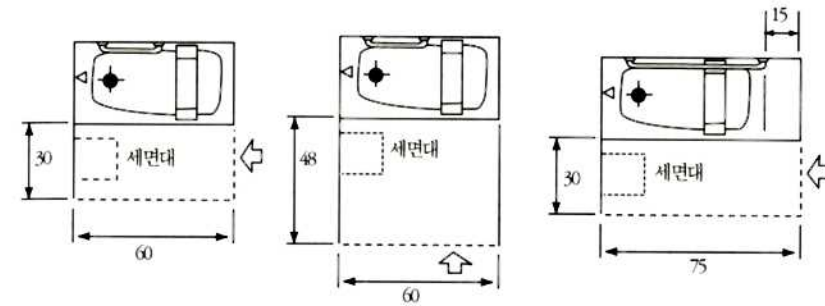


<그림 4>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세면대)

3) 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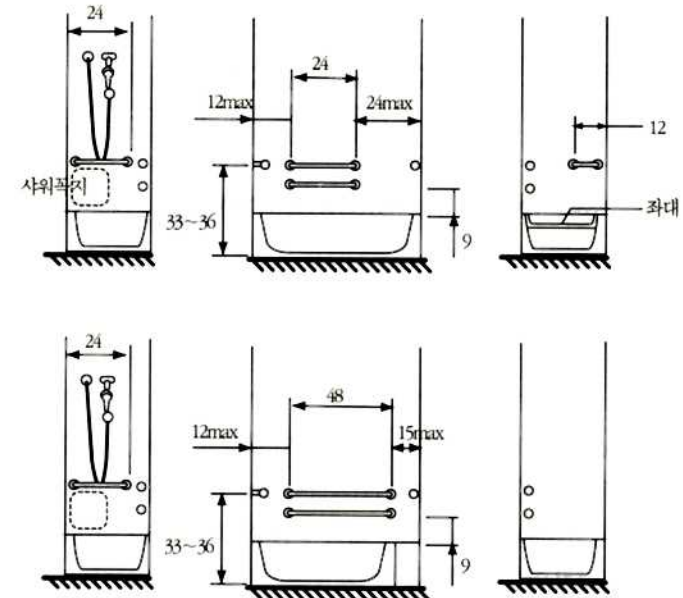
- 욕조는 (그림5)와 같이 설치한다. 욕조전면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샤워의자)를 (그림 5)와 같이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를 한다. 욕조내 좌대는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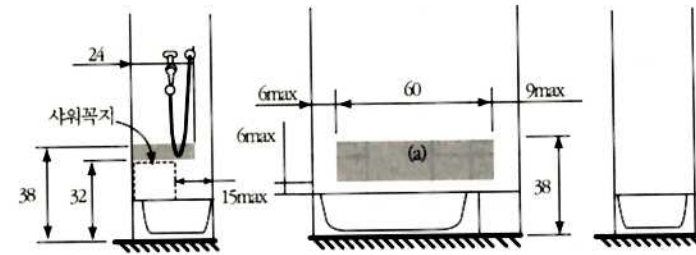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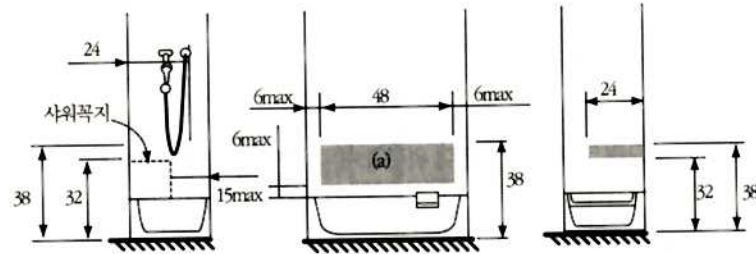
<그림 5> 욕조와 세면대 위치에 따른 공간확보와 좌대의 위치

- 욕조위에는 수평손잡이를 (그림6)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손잡이는 욕조에 앉은 채 잡을 수 있는 높이33인치~36인치 사이에 설치한다.



<그림 6> 수평 손잡이의 위치(욕조 안에 좌대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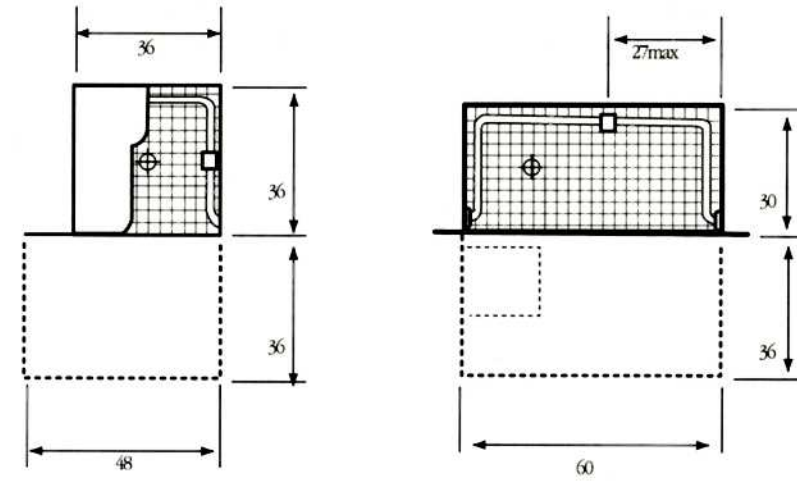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그림의 네모난 부분이 손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이다.(a)
- 샤워호스의 길이는 최소한 60인치(1525mm)가 되어야 한다.
- 손잡이, 샤워기의 위치 등은 좌대가 욕조안에 있는 경우와 욕조머리 부분에 있는 경우가 각각 다르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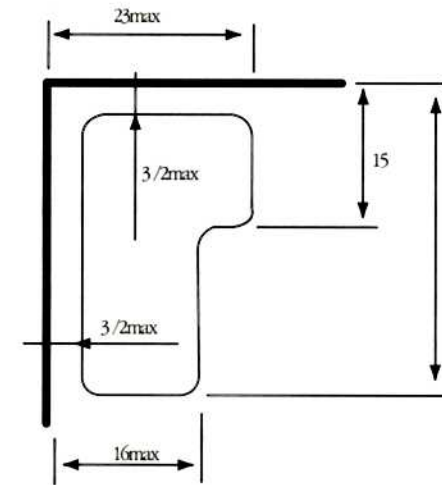
<그림 7> 욕조머리 부분에 좌대가 있을 경우

4) 샤워실

- 샤워실(샤워부스 포함)의 크기는 샤워부스의 모양에 따라 <그림8>과 같다.
- 좌대는 <그림9>와 같다. 좌대는 19인치(430mm~485mm)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좌대는 샤워꼭지나 샤워기의 반대벽에 설치되어야 한다. 좌대는 사용하는 동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재료를 사용하고 안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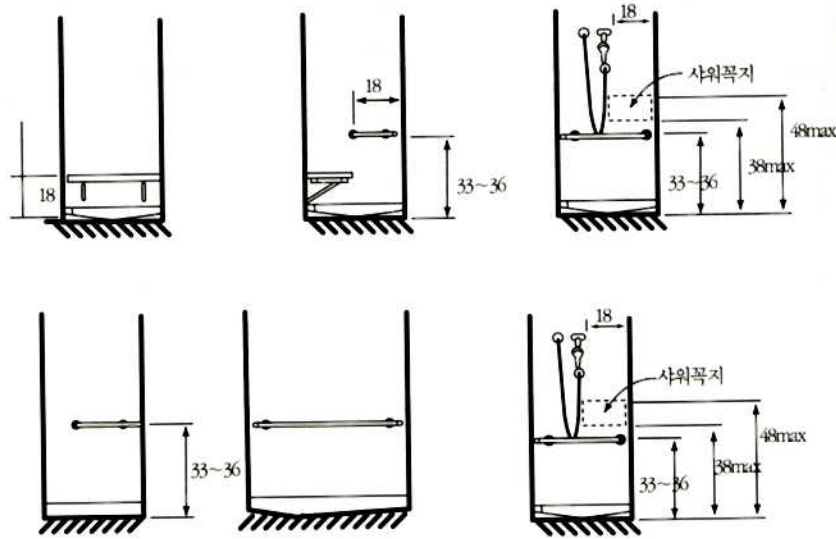


<그림 8> 샤워실의 크기



<그림 9> 좌대 디자인

- 샤워실의 손잡이는 <그림10>과 같이 설치한다. 샤워수도꼭지는 높이 38인치에서 48인치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네모난 부분). 수평손잡이는 높이33인치에서 36인치사이에 위치한다.



<그림 10> 샤워실의 크기에 따른 위치변화

- 샤워기, 샤워기꼭지 등 모든 기구들은 샤워의자 좌대 반대편에 설치한다.
- 샤워기의 호스는 최소한 60인치(1525mm) 길이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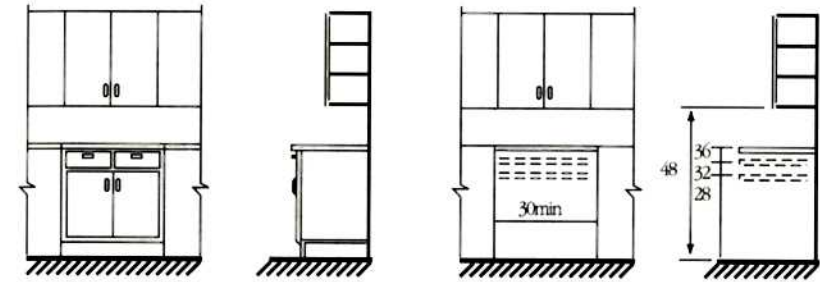
부엌공간

5) 부엌

-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는 벽으로부터 최소한 40인치(1015mm)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최소한 60인치(1525mm)가 필요한 U자형의 부엌은 제외된다.
- 부엌에서 사용하는 렌지, 오븐, 냉장고, 접시세척기, 쓰레기통 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행으로 또는 앞에 설치되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업대(준비대)

- 작업대는 폭이 최소한 30인치(760mm)되어야 하고 <그림11>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림11>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제거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것이다. 작업대의 높이는 28인치, 32인치, 36인치 등 앉은 키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작업대 위의 수납장의 높이는 48인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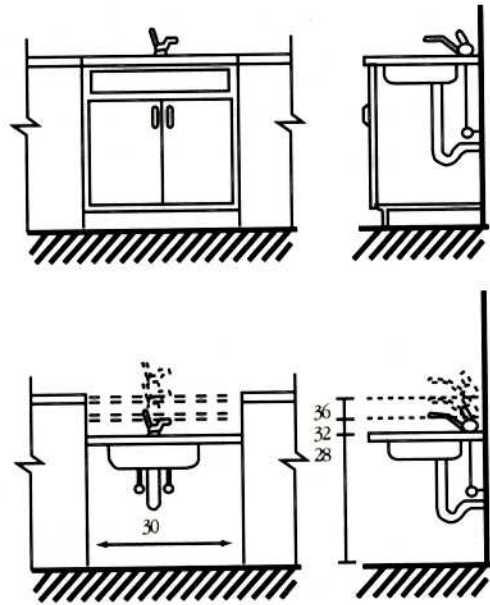


<그림 11> 작업대의 수납장제거 전과 후의 비교

- 조리대의 높이는 바닥에서 조리대 표면까지 측정해서 최고 34인치(865mm)까지 설치한다. 그러나 조리대의 높이는 28인치, 32인치, 36인치(710mm, 815mm, 915mm)로 대치될 수 있다.
- 기본적인 수납장이 있다면 조리대 아래 부분은 최소한 30인치(760mm) 폭까지 제거한다.
- 조리대의 두께는 기구 등을 지탱할 수 있도록 2인치(50mm)로 한다.
- 조리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의 공간이 30인치에서 48인치까지(760mm-1220mm)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리대 밑에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폭은 30인치(760mm), 19인치(485mm) 정도의 깊이의 공간이 필요하다.
- 조리대 표면은 날카롭지 않아야 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7) 개수대

- 개수대와 작업대의 주변 필요한 공간은 <그림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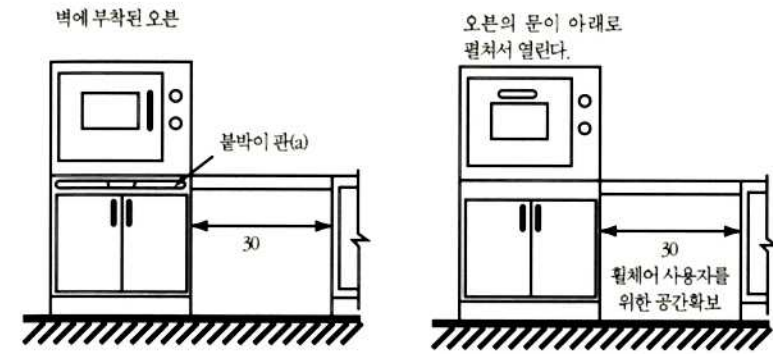
<그림 12> 개수대의 수납장 제거 전과 후

- 개수대와 조리대는 최고 34인치(865mm)높이로 설치한다. 그리고 28인치, 32인치, 34인치(710mm, 815mm, 915mm)의 높이로 대체할 수 있다. 개수대와 조리대 주변은 30인치(760mm)의 폭이 된다.
- 개수대의 깊이는 2분의 13인치(165mm)보다 커서는 안 된다. 단 2개나 3개의 개수대 중의 하나만 이 요구사항을 필요로 한다.
- 수도꼭지는 레버식이나 원터치가 가능한 디자인이다.
- 싱크대의 높이(30인치:165mm), 폭(30인치:760mm), 싱크대의 두께(2인치:50mm) 등은 작업대와 같다.

8) 렌지와 오븐

- 렌지설치에 따른 내용은 작업대를 기준으로 한다. 오븐이나 렌지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둔다면 화상이나 전기쇼크를 방지할 수 있는 물질을 표면에 사용해야 한다. 온도조절 등의 장치는 렌지 건너편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 오븐은 자체 청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 설치하는 공간에 따라 <그림13>과 같은 형태가 있다. 벽에 설치할 경우 작업대에서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 오븐 밑에는 오븐에서 꺼낸 그릇이나 음식을 놓을 수 있는 판을 붙박이로 설치한다(a).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대 하부의 공간을 확보한다. 오븐은 작업대와 같은 높이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림 13> 오븐의 설치

※ 덧붙임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주택개조"는 정성진 대리(파라다이스복지재단)가 2장부터 3장까지, 전정옥 사무국장(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모임)이 1장과 4장 그리고 미국장애인법의 장애인 주택부분을 번역하였다. 또한 기독교텔레비전에서는 97년 4월 12일부터 97년 11월 29일까지 방송된 33가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박영인 자원활동가(중앙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가 전화설문조사를 도와주어 위 내용이 완성되었다.



모든 사람을 고려한 설계 - 보편적 디자인

배웅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연구실장

I. 보편적 디자인의 필요성

II. 보편적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III. 결론 - 편의시설 디자인의 8가지 원칙

I. 보편적 디자인의 필요성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디자인은 '접근을 고려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이었다. 장애인복지가 발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가장 먼저 부딪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편의시설의 문제였으며, 이러한 편의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접근을 고려한 디자인이었다. 이러한 디자인은 계단으로 된 입구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일반 화장실 옆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만들게 하였으며, 일반 공중전화기 옆에 장애인용 공중전화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고려한 디자인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디자인이 오히려 장애인 스스로에게 차별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분명히 정문앞에 있는 입구는 계단 때문에 가지 못하고 후문이나 옆문에 나 있는 경사로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든 전화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정해진 장애인 전용 공중전화만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설주나 건축가들로부터는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소수의 장애인만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시설이 갖추어진 후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앞으로 편의시설의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보편적 디자인' 일 것이다. 보편적 디자인이야말로 장애인에게는 차별과 불평등 대신 평등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시설주와 건축가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디자인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직도 접근을 고려한 디자인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정신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약자들에게 편의와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편의증진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측면이 강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편의증진법의 정신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보편적 디자인일 것이다. 따라서 편의증진법이 시행되는 이 즈음에 보편적 디자인을 소개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디자인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보편적 디자인을 소개하며, 그 배경 이론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보편적 디자인의 정의를 다루었으며,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보편적 디자인의 기초이념과 원칙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보편적 디자인의 이점을, 제5장에서는 보편적 디자인의 디자인 과정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6장에서는 실제적인 가정환경을 보편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디자인하기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편의시설 디자인의 원칙을 제시해 보았다.

II. 보편적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1. 보편적 디자인의 정의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다. 때로는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가장 넓은 개념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설계)', 또는 '평생을 위한 디자인(lifespan design)' 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로부터, 청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시설을 의미하며, 장애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혹은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든(사고나 부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시설을 의미한다.

보편적 디자인은 이제 가장 환영받고, 미래의 경향으로 예견되는 설계경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미북부캐롤라인주립대학의 디자인 학교에 있는 보편적 디자인 센터의 소장이며 설립자인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가 1970년대에 만든 용어이다.

메이스는 보편적 디자인 개념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그 독립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special needs)이라는 딱지를 제거한 것"이라고 말한다. 보편적 디

자인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자연인이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회의 모든 면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을 언급하는 새로운 방법, 즉 사람을 먼저 말하는 방법(people first)이었다. 즉 장애보다는 사람 또는 개인에게 먼저 관심을 둔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장애인(handicapped person)' 이라고 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person with a disability)' 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절름발이(Cripple), 병어리(dumb), 귀머거리(deaf), 맹인(blind), 정신지체(retarded)라고 하지 않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person who has a physical disability)', '말할 수 없는 사람(person who cannot speak)',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person who has a hearing impairment)',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person who has a visual impairment)',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person who has a mental disability)' 등과 같이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대신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person who is chemically dependent)' 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개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보다는 장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개념 속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그들은)은 비장애인이(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다르게 느끼게 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게 함으로써 개개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말았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경사로를 생각해 보자. 주요출입구가 아닌 건물의 뒷편에 위치하고 있거나 주요 출입구와 별개로 위치한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들 모두가 주요 출입구나 앞문으로 출입하는 데 비해 휠체어 사용자들은 주출입구가 아닌 별개의 출입구나 뒷문으로만 다니게 하는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디자인의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이다. 보편적 디자인은 주요출입구 외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요출입구를 제시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게 될 때, 동일한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필요 못지않게 분명해지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동질성에 대한 필요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디자인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부족한 능력(missing ability)' 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하게 고안된(그래서

값비싼), 매력이 없는 제품과 환경을 만들거나, 접근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왔다. 특별하게 고안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보장구 디자인(prosthetic design)' 이라면 접근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디자인은 '접근을 고려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이거나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이다.

보편적 디자인은 이 두 디자인 형태를 포함하며, 오히려 사람을 보다 광범위한 시각으로 봄으로써 한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 보편적 디자인은 사고의 방식과 능력의 정도, 신체 사이즈, 연령에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과 환경을 의미한다. 가장 쉬운 예 가운데 하나가 문손잡이다. 기존의 둥근 손잡이를 사용하는 대신 보편적 디자인은 레버식 손잡이를 사용한다. 문손잡이는 관절염에 걸린 사람도, 어린이들도, 그리고 양손 가득히 물건을 들고 소나기 속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도 다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디자인은 개인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디자인, 비록 필요성이 달라지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독립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한다. 비록 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그들의 장애가 지금까지 일하고, 놀고, 단지 존재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디자인은 그들에게 적합하며,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2. 보편적 디자인의 4가지 기초이념

수전 베하르(Susan Behar)는 보편적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가들에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경영전략의 강화라고 보았다. '4A 원칙(4 'A')' 은 우리의 환경 안에서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디자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즉, 접근성(Accessibility), 적용성(Adaptability), 미학성(Aesthetics), 허용가능성(Affordability)이다. 그런데, 이 '4A 원칙' 과 유사해 보이지만 조금 초점이 다른 네 가지 기초이념이 있으며 이 네 가지 기초이념은 보편적 디자인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요소이다.

첫째, 보편적 디자인은 지원해야 한다(Supportive).

둘째, 보편적 디자인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Adaptable).

셋째, 보편적 디자인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Accessible).

넷째, 보편적 디자인은 안전지향적이어야 한다(Safety oriented).

이 네 가지 서로 관계가 있는 측면들은 기존의 혹은 새로운 제품과 환경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1) 지원하는 디자인(Supportive Design)

보편적 디자인은 기능상 필요한 도움만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도움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이용자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작업표면(surface)과 공간을 비추기 위해 사용된 조명을 생각해 보자. 적절한 조명이 모자라면 실제로 시각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잘 보기 위해 보다 많은 빛을 필요로 할 것이다. 환경(가정, 직장, 창문, 닫힌 공간 등)에 따라 사람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의 정도와 빛의 방향을 다르게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다시 반짝반짝하고 청소하기 쉬운 부엌 조리대를 생각해 보자. 만약 그곳이 지원적 특징이 부족하다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만 더해줄 것이다.

2)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Adaptable Design)

적용성은 다양하게 변하는 요구를 지닌 대다수의 개인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제품과 환경을 의미한다. 조정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s)도 하나의 예이다. 높이를 조정할 수 있고, 가장자리가 둥글며, 윗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책상, 다양한 글자체와 크기로 문자를 보여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뿐 아니라 키보드와 모니터도 또한 적용성을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노화에 따라 시력이 전과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3) 접근을 고려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접근성은 장벽의 제거를 의미한다. 이 장벽은 태도와 물리적인 것 모두를 가리킨다. 보다 광범위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보편적 디자인은 개인이 힘을 가지게 하고, 가로막는 물리적 환경과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보편적 디자인은 접근성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벽들(이동, 의사소통, 복지에 있어서의)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한한다. 예를 들면, 보도의 연석은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유모차를 미는 부모들에게도 어려움을 준다. 하지만 보편적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보도의 연석을 설계할 때, 그러한 연석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하도록 제한한다. 한 번 이렇게 고려를 한 후에는, 디자이너들은 아마도 시각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소와 재질 또는 대조색상과 패턴의 사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접근을 고려한 디자인의 예로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부터 약 44cm의 높이에 설치한 전기소켓, 더 넓고 표준화된 출입문의 사용,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여행경로의 개발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편리한 디자인이다. 좀더 높이 설치된 전기소켓은 서 있는 자세에서도 덜 굽혀도 됨을 의미하며, 더 넓은 출입문은 옮길 수 있는 짐들과 가구들을 위해 여유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분명한 여행경로는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된다. 접근을 고려한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에 대한 '한번 더 생각함'을 의미한다.

4) 안전지향적 디자인(Safety-Oriented Design)

안전지향적 디자인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안전지향적 디자인은 교정과 예방을 지향한다. 바닥의 높이 변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대비되는 색상이나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발이 걸려 넘어지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모서리가 둥근 책상과 캐비닛은 모서리가 날카로운 책상과 캐비닛보다 더 안전하다. 음향신호와 조명신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 경보장치는 오직 한 가지 신호만 가지고 있는 경보장치보다 더 안전하다. 불빛에 의해서도 반응하는 연기경보장치는 화재시에 대피하는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으며, 대피통로를 표시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은 신체적 위협의 극복 이상이다. 안전은 소속감, 자기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인정 등과 같은 심리적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따라서 디자인은 양쪽 모두를 지향해야 한다. 안전한 디자인은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제약 모두를 인식하고 다루어야만 한다.

사용자가 풍요로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과 공간이 정신적 건강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제품과 공간은 개개인이 나이가 들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는 변화를 맞을 때, 독립성의 상실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신체적 능력의 변화로 인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전처럼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줄이거나 자신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환경이 변화하는 인간의 필요와 능력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만 한다.

3. 보편적 디자인의 7가지 원칙

보편적 디자인 센터의 건축가, 제품 디자이너, 환경 디자인 연구원의 연구그룹은 현존하는 디자인을 평가하고, 디자인 과정을 안내하며 보다 더 사용가능한 제품과 환경의 특징들에 대하여 디자이너와 소비자 모두에 대한 교육에 이용하기 위한 7가지의 보편적 디자인 원칙들을 수립하였다.

7가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즉, 원칙의 명칭, 원칙에 있어서의 구체화된 주요개념에 대한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설명, 그리고 안내지침, 즉 원칙에 충실한 디자인에 나타나야만 하는 주요요소의 목록 등이다(단, 모든 안내지침이 모든 디자인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1) 원칙 1: 공평한 이용

디자인은 어느 그룹의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하며 판매가능해야 한다.

안내지침

- 1a. 모든 이용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의 사용을 제공하라.
즉 가능한 언제든 똑같이 하라. 가능하지 않을 때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하라.
- 1b. 어떤 이용자들이라도 차별하거나 낙인찍는 것을 피하라.
- 1c. 사생활, 보장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조항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만 한다.

2) 원칙 2: 이용의 유연성

디자인은 광범위한 개인의 선호와 능력을 수용해야 한다.

안내지침

- 2a.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하라.
- 2b. 오른손잡이나 혹은 왼손잡이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라.
- 2c. 이용자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2d. 이용자의 보조에 맞추는 융통성을 제공하라.

3) 원칙 3: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

디자인의 이용은 이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능력 혹은 일반적인 집중도와 무관하게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안내지침

- 3a.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은 제거하라.
- 3b. 이용자의 경험과 직관에 일치하라.
- 3c. 다양한 문맹의 정도와 언어능력을 고려하라.
- 3d. 중요성에 따라 정보를 정렬하라.
- 3e. 동작의 순서를 위하여 효과적인 암시를 제공하라.
- 3f. 작업 도중이나 작업 완료 후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4) 원칙 4: 시각적 정보

디자인은 이용자의 감각능력이나 주변여건과 상관없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안내지침

- 4a. 필수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드(그림, 음성, 촉감)를 사용하라.
- 4b. 필수적인 정보와 그 주변 사이에 적절한 명도의 대비를 제공하라.
- 4c. 모든 감각적 형식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정보의 '가독성'(可讀性)을 최대화하라.
- 4d. 묘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소들을 차별화하라(즉, 지침이나 지시를 하기 쉽게 만들라).
- 4e. 감각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나 장치를 가진 호환성을 제공하라.

5) 원칙 5: 오류의 최소화

디자인은 위험이나 혹은 사고나 의도되지 않은 동작으로 인한 반대 결과를 최소화한다.

안내지침

- 5a. 위험이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돈하라. 가장 사용이 많이 된 요소들, 가장 접근이 가능한 요소들, 축소되고 분리되거나 방지된 위험스러운 요소들.
- 5b. 위험이나 실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라.
- 5c. 이중 안전장치 형태를 제공하라.

- 5d. 조심을 요구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방지하라.

6) 원칙 6: 신체적 노력의 최소화

디자인은 피로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안내지침

- 6a. 이용자가 중립적인 몸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 6b. 이유있는 작동력을 사용하라.
- 6c. 반복적인 행동을 최소화하라.
- 6d. 지속적인 신체적 노력을 최소화하라.

7) 원칙 7: 접근과 이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 사용자의 신체크기, 자세, 이동성과 무관하게 접근, 도달, 조작, 이용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안내지침

- 7a. 앉아있거나 서 있는 어떤 사용자에게도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분명한 선을 제공하라.
- 7b. 앉아있거나 서 있는 어떤 사용자라도 모든 내용에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 7c. 손과 손잡이 크기의 다양성을 수용하라.
- 7d. 보장구나 개인적인 재활기구의 사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라.

보편적 디자인의 원칙들은 결코 좋은 디자인을 위한 모든 기준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분명히 미학적 측면, 비용, 안정성, 성적·문화적으로 적절함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 역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4. 보편적 디자인의 장점

보편적 디자인은 앞에서 언급한 이념과 원칙 외에도 몇 가지 유익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보편적 디자인은 경제적이다.

보편적 디자인은 개인의 장애에 맞추어 제품과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왜냐하면 각 사람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기존의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응용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들을 표준화함으로써 특수화의 단계를 넘어선다. 바로 그것이 90cm의 넓이를 가진 표준 출입문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나, 위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건축가, 디자이너, 제조업자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통일성있는 기준을 제시해줌으로써). 또한 너비가 넓은 출입문은 그 곳을 통해 가구를 옮기려는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편리하다.

집안에서 대부분의 좁은 출입문은 욕실로 통하는 문들이다. 그것은 초기의 건축가들이 아무도 욕실안으로나 바깥으로 가구를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와 위커를 사용하고 따라서 욕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넓은 출입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 넓은 거실 역시 집안에서 표준이 될 필요가 있다. 들것이 필요한 응급치료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을 들어가거나 나가기 위해서 들 수 없는 좁은 복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들것이 필요한 치료를 방해했는가를 알 것이다.

둘째로, 보편적 디자인은 미적 즐거움을 준다.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은 외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때가 많으며,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규격화된 외형의 제품에 둘러싸이게 된다. 종종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제품들은 전형적인 병원의 격리병실에 사는 것과 같이 약간은 거추장스럽고 보기 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적 즐거움을 주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에 대해서도 원하건 원치않건 주목을 하게 됨으로써 제품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보편적 디자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진 제품들을 응용하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제품을 개발한다.

셋째로, 보편적 디자인은 시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디자인이 제공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원한다. 베이비붐 세대로 세대교체가 됨에 따라 돈이 사용되는 주영역도 달라졌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우,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들 용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그들의 자립생활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제품과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시장성에 대한 재고는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비주류였던 수백만명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다 완벽한 삶의 형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ADA는 재활보조장치와 접근가능한

환경을 통해 일터에 적응해야만 하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이 사람들을 레스토랑, 야채식품점, 극장과 같은 사회속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당연히 모든 사업과 서비스의 소유주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편적 디자인이 어떻게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거부당해온 사람들에게 접근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품들도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들도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과 더 완전한 상호 교류를 시작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는 개인적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가정환경뿐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환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정환경에서 살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디자인과 제품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보편적 디자인 제품은 단순한 보장구 디자인(prosthetic design)에 대한 최고의 선택일 것이며,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며, 더 저렴한 가격과 더 많이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보편적으로 디자인하기 - 디자인의 과정

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정을 하는 것은 창조적인 일이다. 그것은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가능성으로부터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워크스테이션, 의자 그리고 저장 매체를 갖춘 홈오피스의 주변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창조적 활동을 요구한다. 물건들이 차지할 공간과, 현재의 색상체계, 기존 가구의 일반적인 배치, 조명을 고려해야 하며, 사무실의 사용용도(독서, 저술, 도면작성, 컴퓨터 사용 등)를 고려해야만 한다. 선호하는 형태와 재료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예산의 한계안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다.

일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반드시 그 디자인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평가해 보아야만 한다. 색상배치는 잘 되었는가? 책상과 캐비닛은 사무실 크기와 가구에 맞는가? 장시간 작업을 해도 편안한가? 이러한 평가는 아마도 디자이너를 다시 책상과 의자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모든 과정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자신도 모르게 혹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때로 디자인

은 이용자나 전문적인 디자이너의 도움, 혹은 판매원의 조언 등을 포함하는 팀의 협동작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디자인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운 좋게 진지하고 의식적인 의도없이, 한번에 모든 것을 올바른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의 과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과정은 디자이너에게, 더욱 더 전문적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디자이너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가치있는 지식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이너와 다른 전문가들이 보편적 디자인을 지향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지원기술을 적극 수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계단이나 다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휠체어(사용자들에게 능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와 보다 더 완벽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등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디자이너는 또한 홈오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을 직원들에게 줌으로써 종업원들의 능력을 더욱 키워주는 기업들과, 책임성과 성취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들, 차별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과 같은 인권관련 법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업들을 포함하는 설립 정책 개발을 적극 수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각각의 디자인 개발은 세상을 더 발전시킬지도 모른다. 그들이 목표를 성취하는 한, 그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한 대가를 얻을 것이며, 그들의 원칙은 문화를 통해 적용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창조성은 보다 더 좋은 개발로 이끄는 모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모두 보편적 디자인의 좋은 예이다.

'사람 우선(people first)'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이 개념은 다양한 환경안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능력을 끌어낼 때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보편적 디자인은 이해에 의하여 정의된다. 이해는 모든 좋은 디자인이 세워지고 있는 기초이다. 인식에 대하여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보편적 디자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비판적 요소이다. 작업세계는 일반적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보다는 고용주들의 욕구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보편적 디자인의 중심적 개념은 건축되고 상상된 세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오히려 보편적 디자인은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알려지고, 이해된,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존의 환경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과 객체는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상호교류이다. 따라서 보편적 디자인은 모든 분야를 포용한다. 그것은 디자이너, 건축가, 법률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가

교육가 그리고 경영자들이 상호교류하는 통합된 원이다. 보편적 디자인의 과정은 이해로 시작이 되며, 마음에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이 뒤를 따를 것이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무언가를 디자인하면서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은 움직임을 통해 단순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여, 이미 알려졌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편적 디자인의 과정은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디자인이 아니다. 그리고 기존 환경을 약간씩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약간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개선하는 것도 아니다. 보편적 디자인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디자인을 요구한다. 디자이너는 발견과정의 혼돈을 포용하고, 기술에 앞서 상상력을 불어넣도록 요구받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계를 재창조한다.

6. 보편적 디자인 적용의 사례 -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어린이들이 느끼는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감정, 인지는 그들의 감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지내는 집과 공간은 행복감을 느끼고 가정밖의 환경을 바라보기 위하여 초기 유아기에 의지하는 중요한 틀(frame)이 된다.

100명의 미취학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위니(A. Sweaney)등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수가 적은 가정들이 결속력이 있었으며, 반면에 가족수가 많은 가정들은 대부분 체계가 잡히고, 성취지향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족이 적었던 가정들은 상호교류를 위해 주로 거실을 사용하였으며, 가족수가 많았던 가정들은 여러 방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한가지 보여주는데, 어린이들의 침실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으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훈련받는 동안에 주로 보내졌던 방으로 선택되기도 했다. 만약 어린이의 침실이 어린이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으로 인지된다면, 그 방의 디자인은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배치되어야만 하며, 그 방을 사용할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과 색상을 반영해야만 할 것이다.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다음의 항목들은 보편적으로 디자인된 환경을 계획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어린이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안내자이다.

- ① 최상의 위치
친한 이웃들을 만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경험할 때 어린이가 다른 성인들 사이에서 신뢰감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인 이웃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라.
- ② 개인적인 공간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환상을 키울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계획하라.
- ③ 개인 창고
그림그리기, 쓰기, 보물수집, 취미활동 등과 같이, 정체성을 갖게하는 개인적 소속감을 어린이들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라.
- ④ 안전성
환경은 행복감과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해 주는 안전한 안식처라는 느낌을 제공해야만 한다.
- ⑤ 마루공간
깨지기 쉬운 가구나 장식품이 없는 열린 공간이 대근육발달에 적합하다.
- ⑥ 가구
가구는 어린이를 위하여 적절한 인체 기준에 맞게 고려됨과 동시에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도록 디자인되어야만 한다.
- ⑦ 침실
벽가구, 벽, 마루의 표면은 안전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독립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만 한다.
- ⑧ 사회공간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
- ⑨ 조명
적절한 조명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조명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라.
- ⑩ 바닥
표면은 청소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지도 모르는 위험이 없어야만 한다.
- ⑪ 유지
내구성이 있고 청소하기 쉬운 표면과 재질을 선택해야만 한다.
- ⑫ 아름다움

다양한 감각이 시청각과 촉각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밝은 색상, 음향,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⑬ 외부공간
놀이공간 역시 안전성과 아름다움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디자이너의 고려는 어린이들이 책임감 있고, 자주적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해줄 것이다.

Ⅲ. 결론 - 편의시설 디자인의 8가지 원칙

1. 편의시설 디자인의 8가지 원칙

우리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의 디자인이 개발되고 연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 우리나라의 기후와 환경 등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디자인은 보편적 디자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 디자인은 결국 장애인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한계성을 갖게 될 것이며 그 한계성은 결국 비장애인들로부터도, 장애인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아 오히려 편의시설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갑작스럽게 보편적 디자인의 추구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어찌면 아직 견지도 않은 아이에게 뛰기를 요구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리고 보편적 디자인을 지향하는 편의시설 디자인의 8가지 원칙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접근성의 원칙

편의시설은 접근가능해야 한다. 편의시설은 시설이나, 정보 등을 이용하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입문이 좁은 장애인 화장실 등은 편의시설이 될 수 없다. 경사도가 있더라도 가파라서 이용할 수 없고, 출입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 아니다.

2) 독립성의 원칙

편의시설은 이용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편의시설이 아니다. 경사가 급한 경사로는 편의시설이 아니다. 그곳을 혼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여단이 문도 편의시설이 아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3) 자유로움의 원칙

편의시설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의시설,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불러야만 하는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 아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늘 호출버튼을 누르고 담당자를 찾아야 한다면 자율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담당자가 없거나 호출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4) 존엄성의 원칙

편의시설은 품위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야 하거나 자존심이 상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편의시설이 아니다. 편의시설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가 우아하고 품위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평등의 원칙

편의시설은 평등해야 한다. 모두 다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경사로나 뒷문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만 뒷문으로 간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편의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게 접근하고 이용한다면 그것은 편의시설이 아니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전화기의 높이를 조금만 낮춘다면 장애인도, 어린이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인용 공중전화기만 이용해야 한다면 그것 역시 차별이다.

6) 보편성의 원칙

편의시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인과 어린이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물건을 손에 든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손수레를 끄는 사람 등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은 결국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이에 따른 차별을 가져오며, 이용감소라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둥근 문손잡이는 편의시설이 아니다. 물건을 양손에 든 사람이나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열기 힘들기 때문이다.

7) 유연성의 원칙

편의시설은 필요에 따라 조정이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경사로의 예를 들어보자. 경사로가 만능은 아니다. 지붕이 없는 경사로는 눈비가 올 경우 더 미끄러우며 위험할 수 있다. 점자블록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다. 환경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의시설은 조정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거나 더 좋은 방법이 개발될 경우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8) 미의 원칙

편의시설은 아름다워야 한다. 편의시설로 인해서 건물의 전체 균형이 깨지고, 편의시설로 인해서 미관이 사라져서는 안된다. 편의시설도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야 한다. 편의시설은 결코 보기 흉한 괴물이 아니다. 보다 아름답고 보다 보기 좋은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Housing and Society", Vol. 22, 1995.

R.L.Null & K.F.Chery, *Universal Design - Creative Solutions for ADA Compliance*, Professional Publications, Inc, Belmont, California, 1996.

배용호, "보편적 디자인의 이념과 원칙", 『자유공간』 창간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1997.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편의증진법의 제정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흐름-

이성재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 I. 들어가는 말
- II.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흐름 - '심신장애자복지법'
- III. 타 관련법들의 개정
- IV. 장애인복지법에서의 편의시설
- V.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V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VII. 앞으로의 과제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운동은 두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나의 방향은 계속 이어진 장애인들의 죽음과 사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요구와 운동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법제도화를 통한 편의시설 확대 운동이었다. 사실 이 두 운동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의 운동인 동시에 두 개의 운동이었다. 장애인들과 단체의 요구와 운동이 있었기에 법제도화도 가능했으며, 이러한 법제도화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킨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1990년 미국의 편의시설과 접근권에 관한 운동은 부시 대통령이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법에 서명함으로써 하나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복지후진국으로 인정되었던 미국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었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 일본, 한국 등 많은 나라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ADA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공민법에서부터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온 장애인들의 권리가 마침내 하나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ADA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 편의증진법 역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 장애인복지법까지, 그리고 계속이어져 온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작업들이 밀거름이 되어 오늘의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들과 법제도들을 고찰해 보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확보과정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이며, 아울러 편의시설 확보 운동사의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장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운동에 대한 고찰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법제도의 변화 속에 나타난 편의시설 확보의 과정과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재의 우리의 현실을 가늠해 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I.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호시 -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인 획을 긋는 해였다. 그해 처음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보건사회부)'이 제정되면서, 편의시설이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실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편의시설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다. 영어의 accessible과 facility에 상응할 만한 마땅한 용어가 없었다. 따라서 이 두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도 그랬지만 바로 이 용어에 대해서도 일본의 법들이 많이 참고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에도 이에 상응할 만한 용어가 없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편의시설이라는 용어가 없다. 일본은 지금도 영어의 Barrier free를 그대로 가져와 일본식으로 '바리아 후리'라고 사용하고 있다.

이때 대두되었던 용어가 편의시설과 편의시설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시설이라는 면에서 편의시설이라는 용어도 제기가 되었으며, 편리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편의시설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여러 논란과 회의를 거쳐 결국은 편의시설로 결정이 났으며, 이후 우리나라에서 접근이 가능한(accessible) 시설이나 설비는 '편의시설'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81년에 처음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당시의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이 되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었던 것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 편의시설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었던 것은 1981년이 UN이 정한 '세계 장애자의 해'였고, 세계 장애자의 해를 맞아 UN에서는 세계 각국에게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증진을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권리증진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UN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었다.

사실 1981년은 여러 가지로 시기가 적절했다. 당시 제5공화국의 정치 모토는 '복지사회 구현'과 '정의사회 실현'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자 했고, 그 결과 복지에 관련된 많은 법들이 이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과

1) 당시의 장애인을 일컫는 공식 용어는 장애자였다.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1989년 이전의 글이나 문장을 인용할 때는 원문 그대로 장애자로 표기하였다.

관련되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 UN에서도 마침 '세계장애자의 해'를 선포하였고, 아울러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을 '세계장애자 10년'으로 선포하고 그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각국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외적인 이러한 여건들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지금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다른 간단한 법이었다. 그리고 이때 삽입되었던 편의시설에 관련된 제13조는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나 규칙도 없어서 단지 선언적인 내용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10여 년이 지난 1995년의 일이었다.

따라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편의시설에 관련된 규정은 편의시설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법제화되고, 또 법률로서 규정되었다라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타 관련법들의 개정

비록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간단한 선언적 내용만이 삽입되었으나 관련 법령들에서의 개정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것은 건축법에서였다.

가장 먼저 시작된 부분은 관람석에 대한 부분이었다. 1985년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은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람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1986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2항에서는 승강기와 화장실에 관한 부분을 첨가하였다. 즉,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이나, 4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공건축물에는 1대 이상의 지체부자유인자

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연면적 5,000㎡ 이상), 관광호텔, 또는 공중변소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개정이나 신설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 등은 여전히 없었다. 따라서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람공간이 무엇인지, 경사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는 어떠한 것인지,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1988년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1988년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55조는 승강기와 화장실의 구조를 규정해 주었다. 그 당시 규정된 승강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 ① 승강기 안팎에 장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이내에 설치할 것
- ② 승강기 출입구의 너비는 85cm 이상으로 할 것
- ③ 승강기 밖의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 ④ 승강기 출입구와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고 이와 직각 방향의 면의 너비는 1.4m 이상으로 할 것

위와 같은 규정은 현재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편의시설 설치규칙)' 과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음성안내, 점자표기, 손잡이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한 화장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 ① 변소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②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각 변의 길이는 그 유효폭이 2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③ 대변기의 양쪽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이 규정에서도 역시 출입문의 유효폭에 대한 규정과 대변기 양쪽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 설치 규정 등도 당시로서는 진일보한 규정들이었지만, 세면대에 대한 부분, 출입문에 대한 부분, 손잡이의 규격에 대한 부분 등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들은 1995년에 '편의시설 설치규칙' 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승강기와 화장실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다.

제6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대통령자문기구로 구성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에서 편의시설과 관련되어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는 1989년 8월 29일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자가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확보하게 하여야 하며, 이동과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의사교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 종합대책안은 "편의시설은 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노약자·임신부 등에 편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건축물·지하철을 비롯한 교통기관·도로·공원 등에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 종합대책안이 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을 이동과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보았다는 점과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장애인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노약자와 임신부 등 이동약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편의시설의 이용자를 장애인뿐 아니라 이동약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그전까지 편의시설은 의례히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로만 여기던 사고를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지난 해인 1997년에 편의증진법이 제정됨으로써 결실을 거두게 된다.

IV. 장애인복지법에서의 편의시설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그 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더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1989년에 대대적으로 개정이 된다.

이때 개정된 부분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호칭이 심신장애자에서 장

애인으로 바뀐 것을 비롯하여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1985년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1988년에 있어서의 건축법 시행규칙에서의 25조와 55조의 신설, 그리고 1989년의 장애인복지종합대책 등에서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촉구 등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의 개정과 함께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전초작업이 되었다.

1989년 12월 30일에 드디어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0년 12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비로서 편의시설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장애인복지법 제33조는 편의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복지시설기관은 제3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1항), 편의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3항), 시설이나 설치가 미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5항)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훗날 편의시설 설치규칙의 근거조항이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항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설비의 설치에 응하지 않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규정도 삽입함으로써 그 이전의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보다도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이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3항에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3항에서 언급한 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①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나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 미끄럼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없는 횡단보도
 2. 공원 :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저상매표소, 저상음료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관람석,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승강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시각장애인용 신호종
 3. 교통시설 : 음향신호기, 장애인 승차대, 저상매표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표지
 4. 통신시설 : 장애인 전용 공중전화
 5. 공동주택 :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6. 기타 공중이용시설 :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화장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 ② 제1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종류를 지정하여 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비대상과 설비의 종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규정된 설비대상과 설비의 종류는 그 이후의 편의시설 설치규칙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편의증진법 역시 편의시설의 설비 대상을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공원·교통·통신·공동주택 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의 영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교통시설에 철도역사, 지하철 역사 등은 포함하면서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있어 한계성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제2항에서 규정한 세부 설치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편의시설의 개선효과를 가져 오지는 못했다.

V.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3년도 4월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행정쇄신위원회는 1993년 11월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 연구를 의뢰하여 마련한 5개년 계획으로서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짓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 개선방안에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과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서 6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6가지 방안 가운데 가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조항과, 방송에 수화 또는 패쇄회로를 이용한 문자방송을 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조항은 편의시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가칭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1994년 2월경부터 자료수집을 하는 한편 관련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은 곧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 첫째는 건설부, 노동부, 문화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다.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건설부, 노동부, 문화부, 내무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부서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둘째는 건축법 등 관련 타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 역시 쉽게 법률을 개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타관련 법률의 개정에는 이해 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도 있어 개정작업도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결국 보건사회부는 2개월만인 94년 4월경에 가칭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준하여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

보건사회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하고 이 연구결과에 의하여 1994년 12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편의시설 설치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실로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뒤 5년만의 일이었다. 5년이 지나서야 장애인복지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했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다.

보건사회부는 이 규칙에서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등을 편의시설 설치의 적용기준으로 지정하고 각 적용기준 대상마다 필요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이 규칙의 특징은 첫째,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

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 하고 있다. 이를테면, 도로는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지하도로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시장·도지사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4조 및 제5조). 셋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를 지정해 주고 있다.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근린공공시설의 경우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지정해 주고 있으며, 판매시설의 경우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지정해 주고 있다. 넷째, 정비대상시설의 기한을 지정해 주고 있다. 근린공공시설, 종합병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은 편의시설 설치규칙이 시행된 후 5년 이내에, 철도 역사와 도시철도 역사는 10년 이내에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편의시설 설치규칙 역시 장애인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전반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이동과 건축물 및 정보 등에의 접근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했으며 또한 강제규정도 5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갖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편의시설 설치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시행규칙이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게 되었다. 결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들에 대한 편의증진과 편의시설은 제외된 셈이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동약자들의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총체적인 법률이 절실히 필요했다.

V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편의증진법의 제정 과정

1996년도 하반기부터 국회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새정치국민회

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고 이 공청회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법안마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이 두 법안은 1996년도 정기국회가 거의 끝날 무렵인 11월 30일과 12월 2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안(새정치국민회의)'과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1996년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제11차, 12차 위원회에서 양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해 이 두 법안을 조정하고자 했다. 이때 양당 안의 가장 큰 쟁점은 보장구에 관한 규정의 삽입여부와 기금 설치의 문제였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보장구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첨가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기금의 설치여부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몇몇 신한국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원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가 없다면,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의 작업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결국 편의증진법의 과학적 운영이 힘들어지며, 기금이 형성된 뒤에도 시설주에의 지원 등이 어렵게 되어 편의증진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심의통과일의 마지막날까지 서로 줄다리기를 한 끝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법안을 조정하여 대안으로서 편의증진법안을 1996년 12월 16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임위원회의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법안을 넘기는 시일이 지나 1996년도 정기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대로 이듬해인 1997년도 2월에 열렸던 임시국회에 상정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도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을 지정하면서 기존의 건물까지 모두 대상시설로 하게 되면 소급입법제정금지를 위반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건물주와 신축건물의 건물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기존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소급입법

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두었던 취지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즉각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모든 건물주를 처벌하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 법의 공포와 함께 시설주에게는 일정한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유예기간 동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시행 후에 새롭게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만 처벌을 하지는 것이었다.

둘째로, 1억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문제였다. 편의증진법안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환경이나 기타 여건 등 불가능한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를 못하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의무의 부과라는 차원에서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의 부과란 사회공동체로서 연대하여 부담해야 할 의무, 헌법해석의 최고원리 중 하나인 공공복리를 위한 모든 국민의 연대무의 부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람은 설치를 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고, 설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냄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사람 역시 이행강제금을 냄으로써 기금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로, 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거기에 또 징역형이라는 형벌까지 가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으며,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공의 안녕을 해친 것도 아닌데 형벌을 가하는 것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편의증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법사위의 견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적 안녕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질 수도 있으며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편의증진법을 해석한다면, 편의시설의 미설치는 분명히 공공의 안녕을 해친 것이며, 따라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량이 불법주차했을 경우 내게 되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볼때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었다. 그러나 50만원이하의 과태료는 외국의 사례와 비추어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였다.

이러한 법사위의 논쟁으로 편의증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늦게 통과시키더라도 강력한 법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니면 먼저 통과시키고 차츰 차츰 개정해 나갈 것인가? 결국 먼저 법을 제정하고 차츰 개정해 나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리고 다시 법사위와의 재협상이 시작되었다.

법사위와의 재협상에서 결정된 것은 네 가지였다. 첫째로, 기존건물을 제외시켰다. 다만 증축이나 개축 등 구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은 기존건물도 포함이 되었다. 둘째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셋째로, 처벌을 완화시켰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처벌하도록 하는 대신에 1회의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도록 단계를 두었으며, 처벌에 있어서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은 폐지하였고 벌금형도 1,0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다. 넷째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을 경우의 과태료도 5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편의증진법안은 1997년 3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4월 10일에 법률 제5332호로 공포가 되었다. 그리고 1998년 2월 24일에는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5,675호로 제정되었고 1998년 2월 28일에는 동법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다.

2. 편의증진법의 내용

편의증진법의 근본정신은 반차별(反差別)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고 비장애인이 얻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차별이다. 다만 차별의 형태가 간접적인 것뿐이다. 따라서 편의증진법을 통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차별의 철폐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편의증진법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첫째는, 설치대상의 확대로서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건물 등에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을 넓히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이 법의 실효성 문제로 법

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일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벌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형벌로서 벌금형을 도입하도록 했다. 셋째는, 편의시설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이다. 이 기금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와 설치의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서이다.

편의증진법은 전문 29조와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적, 정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접근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주의 의무, 설치의 지원, 적용의 완화,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 시정명령, 청문절차, 벌칙,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하여야 할 것은 먼저 1조인 목적이다. 편의증진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 편의증진법이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이동약자들이 스스로(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제4조 접근권에 관한 조항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접근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차별을 철폐하고 이용상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게 한다.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제3조). 이 원칙은 편의시설을 만들되 뒤쪽에 만들거나 멀리 돌아가게 하는 등의 차별을 방지하고 아울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강화된 부분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아울러 시설주관 기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고(제10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제11조),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제12조).

또한 시설주에 대한 의무조항도 역시 강화된 부분이다. 시설주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유지·관리해야 하며(제9조),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안내표시를 해야 하고(제10조), 휠체어·점역안

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제16조).

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보다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5조),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고(제24조), 기존시설 중 대상시설은 2년 이상 7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 때도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부칙 제2조) 시설주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편의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역시 재정문제이다. 편의증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강구하도록 해야 하며, 법인이나 개인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에 든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또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기술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이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 등으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제19조), 재정이 없어 편의시설 설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마련을 하고 있다.

벌칙의 강화도 편의증진법의 목적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제25조), 휠체어·점역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27조), 장애인 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27조)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까지 매년 1회씩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제28조). 편의증진법에서는 이처럼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과 같이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II. 앞으로의 과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의증진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의 ADA와

비교해 보아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편의시설과 접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것이다. 정말 이 법률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의 편의증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첫째, 편의증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발견되었다. 즉, 이 법은 이동과 접근 등 편의증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동의 보장에 치우친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등의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편의증진법에 대한 개정일 것이다. 따라서 당장 개정은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고 문자화 될 필요는 없다. 법은 정신과 원칙만을 제시해 주고 그 정신과 원칙에 따라서 현장에서 편의증진이 보장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단체가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와 함께 역량을 길러 정책의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한다면 '장애인 눈높이 복지'는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조사, 고발 등을 통해 장애인 주권회복운동에 앞장서는 일이다.

셋째,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 편의증진법은 말 그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해 주지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법률은 장애인의 편의증진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법률의 목적처럼 노인과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이동약자들의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해 줄 것이며 더불어 노인, 여성 등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이 편의증진을 위한 운동에 참여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운동일 것이다.

편의시설의 법제화는 결국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편의증진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관련 법규들의 변천은 곧 우리사회의

공공복리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의 편의시설 조항은 실제적인 시행령과 규칙들이 뒷받침되지 못해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지만 결국은 발전하여 편의증진법의 제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현재 편의증진법에서의 접근권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해도 접근권 역시 언젠가는 실질적인 접근권의 보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경위

차례

한국복지산업연구소 소장

- I. 들어가는 말
- I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추진경위
- II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정책
-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지난 몇 년 동안 장애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줄곧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률은 본문 29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7년 4월 10일에 제정,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보기간을 둔 후 시행하게 되었다.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편의시설 설치규칙)'은 단지 건축물의 설치기준과 이동에 관한 편의제공이라는 소극적 대처에 불과했다.

반면에 이번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그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로 확대하고, 제4조에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이동과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였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접근권(Right to Access)을 인정한 진일보한 시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조항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접근권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의 벽을 없애고, 무장애 공간(Barrier Free Zone)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

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 등을 할 때 비장애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편의시설을 의미하며, 모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리(Handicap)를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을 총칭한다(서선호, 1993).

장애인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런 불편없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의 시간개념에 맞추어진 교통신호체계, 수많은 건물목, 지하보도, 급하게 경사진 도로 등의 도로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에서 오는 물리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 성인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시켜 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반 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기능은 장애인들의 신체상의 편리함을 더해 주고, 또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경제적 측면으로 인력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으로도 고용 확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도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경제적인 객체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장애인편의시설 추진경위에 대해,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행했던 편의시설 확충계획과 관련된 기록, 법령 등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추진경위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아 유엔이 각국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것이 태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제13조(편의시설)에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에도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와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었는데, 급기야 1984년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한 김순석(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그리고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 난간에 부딪혀 사망한 백원욱(뇌성마비, 대학생)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들의 죽음은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그러한 소외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도시공간 내의 편의시설 설치의 미비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문화적 생활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생존권의 침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기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시각장애인용 신호기·횡단보도·유도바닥재·경사로·장애인용 공중전화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1985년부터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부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삽입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하였고,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96년 9월말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은 총 234,842개소로서 횡단보도 턱낮추기가 44,967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안내표시, 경사로, 유도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주차장, 승강기 등의 순이다. 공공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편의

시설 평균 설치율은 36.8%로 보건복지부 백서에 처음으로 편의시설 실태 통계자료가 발표된 1985년 말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표 1〉 〈표 2〉 참조)

<표 1> 대상시설별 설치현황

단위: 개소, %

| 구분 | 계 | 횡단보도 | 공원 | 근린 공공시설 | 노인 장애인 시설 | 학교 | 공공 업무시설 | 도시철도 역사 | 기타 |
|-----|---------|---------|--------|---------|-----------|---------|---------|---------|---------|
| 대상 | 637,776 | 175,769 | 13,010 | 76,762 | 12,717 | 119,468 | 27,499 | 4,006 | 208,545 |
| 설치 | 234,842 | 69,042 | 4,910 | 29,294 | 6,239 | 38,682 | 12,023 | 1,900 | 72,662 |
| 설치율 | 36.8 | 39.3 | 37.7 | 38.2 | 49.1 | 32.4 | 43.7 | 49.7 | 34.8 |

* 기타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공장 및 산업시설, 도·소매점, 관람집회시설, 버스터미널, 공항시설, 항만 여객시설 등임.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7. 12

<표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단위: 개소, %

| 구분 | 계 | 턱 낮추기 | 유도블록 | 경사로 | 승강기 | 화장실 | 주차장 | 안내표시 | 기타 |
|-----|---------|--------|--------|--------|--------|--------|--------|---------|---------|
| 대상 | 637,776 | 64,429 | 86,348 | 54,737 | 11,109 | 37,428 | 30,744 | 101,127 | 251,854 |
| 설치 | 234,842 | 44,967 | 20,365 | 21,928 | 2,536 | 10,464 | 9,849 | 26,264 | 98,469 |
| 설치율 | 36.8 | 69.8 | 23.6 | 40.1 | 22.8 | 28.0 | 32.0 | 26.0 | 39.1 |

* 기타는 출입구, 복도, 계단, 전화기, 매표소, 개찰구, 휠체어리프트임.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7.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전체 대상시설 대비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도 타 편의시설 및 다른 건축물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없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교통시설에는 편의시설이 다소 설치되어 있으나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교통수단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대중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시설주가 장애인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설치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미흡하여 편의시설이 전사용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신축되는 시설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시설물에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여러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장애인의 연속된 이동을 고려한 통합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우며,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다양한 항목의 편의시설 설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편의시설 설치 추진경위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식적인 기록은 1978년 대전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내 150개소의 건널목 양쪽 블록턱을 없애고, 공중전화박스를 낮춘 장애인용 공중전화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부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발표되고 관련법규가 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제도화되기에는 미흡한 말뿐인 행정이 많았다. 본격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구체화되기는 편의시설 설치규칙이 시행된 1995년 이후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1) 1978년 7월 11일

내무부에서는 도시환경시설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횡단보도 도로 경계선을 낮추어 차도와 비스듬히 접하도록 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리어카의 통행을 쉽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학교 주변에 보통 전화대보다 전화박스를 낮춘 지체부자유아 및 어린이 전용 공중전화를 설치하도록 했다.

2) 1978년 10월 26일

대전시에서는 지체부자유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현관 문턱 일부를 헐어 장애인 전용문을 만들고, 시내 150개의 건널목 양쪽 블록턱을 없애도록 업무지시했다.

3) 1979년 5월 18일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시내 33개 국민학교에 지체부자유 어린이를 위한 전용 화장실을 만들고, 손잡이가 달린 좌변기를 설치해 주며, 2층 이상 교실에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에 보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4) 1979년 6월 1일

건설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개정하여 지체부자유자를 위해 보도의 턱을 완만하게 낮추기로 했다.

5) 1980년 4월 17일

서울시는 지하철 2·3·4호선 승강대에 장애인을 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6) 1984년 11월 16일

서울시는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서울시장 앞으로 남기고 자살한 장애인 김순석의 죽음을 계기로 은행, 교회, 병원 등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때 경사로의 설치와 횡단보도의 턱을 2cm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자 편의시설 정비계획'과 '장애자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7) 1985년 5월 7일

정부는 '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장애자 편의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장애인의 출입 및 피난에 용이하도록 경사로 설치를 규정(제43조 제5항)하였으며, 정부 제2청사에 휠체어 전용 경사로를 설치했다.

8) 1985년 7월 30일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 횡단보도 755개소의 보도와 차도 경계석을 낮추고 758개소에 점자 보도블록을 깔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시내 각 백화점·호텔 등 관광업소 주변도로와 김포국제공항 및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및 연결도로 등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고궁·공원 등 관광명소와 올림픽경기장·선수촌 주변 및 연결도로의 보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9) 1985년 11월 30일

'85 농구 점보시리즈에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이 마련되었다. 본부석

아래 의무석에 마련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은 15명 안팎의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0) 1986년 2월 21일

건설부는 보도턱 낮추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발표하였다.

11) 1986년 3월 25일

서울시는 도심지 20개소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갖춘 공중변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12) 1986년 10월 2일

건설부는 1988년부터 기존 또는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의무화하기로 발표하였다.

13) 1989년 8월 2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였다. 동, 종합대책안(VIII, 생활환경의 조성부문)에 의하면 "장애자가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의사교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노약자·임산부 등에 편리한 것이므로 공공건축물,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기관·도로·공원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시설별 기술표준에 맞게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공원이나 공공기관 등에는 휠체어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14) 1989년 12월 30일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1990. 12. 1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강화하여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편의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까지 규정하여 강제성을 띠게 하였다.

15) 1991년 12월

보건사회부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법 및 세부기준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복지체육회는 동 연구를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박용환 교수)에 용역의뢰하여 1992년 6월 18일 그 연구결과를 제출

받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검증 등을 거쳐 1994년 5월 24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였고 관련부처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청취 및 조정작업을 거쳐, 1994년 12월 30일 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6) 1992년 11월 19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개최한 제1회 재활심포지엄에서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최재필 교수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을 발표한 이래, 다음 해인 1993년 9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회 재활심포지엄에서도 최재필 교수는 '장애인건축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법규 체크리스트 및 행동지침 개발'을 발표하였다. 1994년 9월 30일 제3회 재활심포지엄에서는 경원전문대학교 건축학과 조철호 교수가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설정과 법적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3년에 걸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설계지침'(1995)을 발간하였다.

17) 1993년 8월 7일

1993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건축지침서를 제정하여 전시장 내 모든 건축물과 시설에 적용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출입구, 전용 관람석을 설치하였다. 입장료 할인과 무료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였으며, 동·서·남문 출입구에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등 보조장구를 준비, 장애인들에게 대여하고 수화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전시장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18) 1993년 10월 29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에서는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 서비스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며, 1994년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토록 하였다.

19) 1994년 3월 23일~4월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녹색교통운동이 공동으로 '장애인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학생, 장애인 등 3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투입하여 서울 1기 지하철 1·2·3·4호선 124개 역의 계단, 발매기, 대합실, 역사시설, 승강장 및 승강기, 공중전화, 화

화장실 등 8개 부문 100여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20) 1994년 4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건설정책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양대학교 박용환 교수의 발제로 '장애인 문화창달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1994년 12월 15일 정립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종영 교수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접근권의 실현방안과 전망', 방송대학교 법학과 강경선 교수가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을 발표하였다.

21) 1995. 3월 9일~4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4,94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현황, 해당 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인지도 및 인지방법,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여부 등 세 가지가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집(1995)'을 발간하였다.

22) 1995년 4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제1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회의 장애인 시설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1천여 교회에 발송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회복을 위한 실천강령을 제시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권고안에서 교회 내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지체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자동출입문, 전용 화장실 등을 갖춰 줄 것을 요청하였다.

23) 1995년 12월 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지체 및 시각장애인 502명을 표본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편 도로교통안전협회 부설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과 보행연속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립한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연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4) 1996년 1월 5일 부산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지하철 명륜동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를 시범 설